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Q&A 사례집

2016. 9.



국민권익위원회

발간사

지난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이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거쳐 다가오는 9월 28일 그 시행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르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7월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교육자료를 발간하여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이번에 더 나아가 청탁금지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청탁금지법 Q&A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청탁금지법 Q&A 사례집>은 각 직종별로 다양한 질의를 수집·분류한 후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자문을 거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Q&A 사례집>에 담긴 대표적 사례들이 비슷한 유형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참고가 되길 바라며, 사례마다 구체적 조건 및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앞으로 실제 사건에서의 판례 등을 통해 합리적 기준이 정착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청탁금지법 Q&A 사례집>이 선진화된 부패예방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성영훈**

목 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Q&A 사례집

PART I 적용범위 / 01

- 1. 인적 적용범위 3
- 2. 장소적 적용범위 20

PART II 부정청탁의 금지 등 / 21

- 1.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 23
- 2. 부정청탁의 방법 26
- 3.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29
- 4. 부정청탁 대상직무 37
- 5.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47
- 6. 부정청탁의 처리절차 54

PART III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 57

- 1. 수수 금지 금품등 59
 - 가. 제재기준 관련 59
 - 나. '동일인' 과 '1회' 60
 - 다. '각출' 문제 66
 - 라. 회계연도 68
 - 마. '직무와 관련하여' 의 의미 69
 - 바. 금품등 가액 평가 문제 84
 - 사. 상호 접대의 경우 공제·상계 문제 100
 - 아. 금품등 수수 주체 문제 105
 - 자.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110

2.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115
가. 청탁금지법과 다른 법령의 관계	115
나.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116
다.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129
라.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130
마. 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131
바.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133
사.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	139
아.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140
3. 금품등 수수행위에 대한 제재	152
가. 공무원 등 관련 사례	152
나.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관련 사례	156
다.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관련 사례 ..	168
라. 공무수행사인 관련 사례	180
4.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181
5.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87



I

적용범위

I

적용범위



1. 인적 적용범위

사례 1 '공직자등'에 포함되는 자 중 '직원'의 범위

Q

'공직자등'의 정의와 관련하여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 및 언론사의 경우에는 '임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물리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예컨대 수위,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자, 운전자 등)이나 계약직, 임시직 등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A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적 업무 종사자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적 업무'는 해당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전체 업무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언론사의 경우 보도, 논평, 취재 외에 행정, 단순노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 '공직자등'에 해당
- 학교법인,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직원으로서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
 - ※ 다만, 전문업체(예를 들어 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와 체결한 용역(도급)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체 소속 직원이므로, 학교(법인), 언론사의 직원이 아니어서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음
- 한편, 학교법인 및 언론사의 고문의 경우에도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되면 "공직자등"에 해당될 수 있음

참고판례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사례 2 의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세브란스병원 의사 甲과 삼성서울병원 의사 乙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인가요?(甲과 乙은 의과대학 교수가 아님을 전제)

A

甲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나, 乙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세브란스병원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속 부속병원**이므로, 세브란스병원 의사 甲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함**(제2조제2호다목)
 -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설립한 병원**으로서 성균관대학교와 교육협력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이므로, 삼성서울병원 의사 乙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음**
- ※ 국립병원, 도립병원, 시립병원, 지역의료원 등 소속 의사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나목)

사례 3 국회의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Q

국회의원은 적용대상에서 빠져있나요?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부정청탁을 해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인가요?

A

국회의원은 '공직자등'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며,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임(제2조 제1호가목, 제2호가목)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 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하여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제5조제2항제3호)
 - 이러한 예외규정은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사례 4 '금품등'의 수수 주체 : '공직자등' 및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Q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누구에게는 1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만 살 수 있는 것인가요?

A

- ◆ 그렇지 않습니다.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의 경우,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대가성 여부는 불문).
-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 되는 자는 '공직자등' 및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이므로(제8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참조), 식사 접대를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해당하고, 식사접대를 하는 사람과 식사접대를 받는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사례 5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Q

한국마사회와 기업은행 소속 임직원도 각각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인가요?

A

한국마사회, 기업은행 모두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한국마사회와 기업은행 소속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제2조제2호나목)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한국마사회는 준시장형 공기업, 중소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함

사례 6 대학시간강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Q

대학시간강사의 경우에도 외부강의 사례금 등에 있어서 대학교수와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상의 적용대상인가요?

A

시간강사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시간강사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제2조제1호라목,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2018. 1. 1. 시행 예정인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시간강사도 교원에 포함되므로, 교원으로서 “공직자등”에 해당

「고등교육법」(2018. 1. 1. 시행 예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사례 7 '언론사의 임직원'의 범위

Q

언론사 비등기이사, 프리랜서 기자, 언론보도와 무관한 업무를 하는 직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A

- (1) 비등기이사 : 언론사 비등기이사는 언론사 임원(이사, 감사)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2) 프리랜서 기자 :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3) 언론보도와 무관한 업무를 하는 직원 :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임원 :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며,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

○ 직원 :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

- 보도·논평·취재와 그 밖에 경영, 기술, 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 직원에 포함

※ 인턴기자과 같은 단시간근로자 및 언론사의 지사·지국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직원에 포함

- 다만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은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언론사의 임직원에 포함되지 않음

사례 8 사외보 발행 회사가 '언론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Q

회사에서 사외보를 발행하고 있지만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신고나 등록은 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언론사'에 해당 하나요?

A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기간행물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함
- 이 중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함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잡지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 나. 정보간행물 :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 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 라.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2.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사례 9 리서치자료 등을 발간하는 증권사가 ‘언론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증권사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하여 리서치자료 등을 발간(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은 발행 안함)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정기간행물사업자’로 등록·신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권사도 청탁금지법상 ‘언론사’에 해당하나요?

A

증권사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하여 발행하는 ‘리서치자료’ 등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간행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증권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하고, 이 중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함(「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제12호)
- ‘정보간행물’이란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로서, 이러한 정보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음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잡지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 나. 정보간행물 :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 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 라.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2.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사례 10 인터넷신문사업자인 비법인사단 임직원 전체가 ‘공직자등’ 인지 여부

Q

○○케이블TV방송협회(이하 ‘협회’)는 케이블TV방송사업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며, ‘□□케이블’이라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기도 합니다. 협회의 대표자와 임직원 전체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A

‘□□케이블’ 발행 부서 책임자와 그 소속직원만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함
 - 협회는 ‘□□케이블’이라는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므로, 언론사에 포함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4.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 다만, 사보·협회지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등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대상에 해당

사례 11 공직자들의 이중직위(학교법인 이사장 겸 대표이사)

Q

甲은 사기업 대표이사이면서 학교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수행 과정에서(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함을 전제) 거래처 대표이사 A와 골프를 치면서 2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A

사기업 대표이사로서 2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았을 뿐,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금품등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되는데(제8조제2항),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대표이사로서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 아님

※ 금품등이 공직자등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것인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금품등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됨(제8조제1항)

- 비록 甲이 사기업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학교법인 이사장)**를 가지는 이상, 공직자등이 아닌 지위에 기해서 받은 금품등이라거나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음**

※ 이중직위자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높은 청렴성과 사명감을 가지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

사례 12 공직자들의 이중지위(대학교수 겸 사외이사)

Q

- (1) A회사(민간기업)의 사외이사로 위촉된 국립대 교수甲(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A회사가 지급하는 월급도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등인가요?
- (2) A회사가 '사외이사 보수 및 활동비 지급규정'에 따라 해외연수비 및 휴양시설이용비 명목으로 甲에게 500만원을 지급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등인가요?
- (3) 청탁금지법상 甲에게 선물은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A

- (1) 월급은 사외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따른 대가적 성격에서 지급받는 것으로서,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甲이 민간기업인 A회사의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대학교수)를 가지는 이상, 50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3) 국립대 교수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주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주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제8조제3항제2호), 이러한 목적을 벗어나거나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금품등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되는데(제8조제2항), 국립대 교수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사외이사로서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 아님

※ 금품등이 공직자등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것인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금품등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됨(제8조제1항)

- 비록 甲이 민간기업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국립대 교수)를 가지는 이상, 공직자등이 아닌 지위에 기해서 받은 금품등이라거나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음**

※ 이 중 지위자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높은 청렴성과 사명감을 가지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

사례 13 공직자들의 이중지위(대학교수 겸 의사)

Q

○○사립대 의대 교수이면서 같은 대학교의 협력병원(○○사립대학교와 별도 법인) 소속 의사인 甲이 며칠 전에 치료해 준 환자 A로부터 고마움의 표시로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환자 치료 관련 甲의 금품 수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대학교수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협력병원 소속 의사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립대학교와 교육협력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 소속 의사는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지 않음), 甲은 공직자등(대학교수)으로서의 지위와 공직자등이 아닌 의사로서의 이중 지위를 가짐

참고판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서울대학교병원 의사가 구치소로 왕진을 나가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해주거나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을 해주는 것은 의사로서의 진료업무이지 교육공무원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도1420 판결)

- 다만, 금품등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됨(제8조제1항)
 - 甲이 공직자등이 아닌 의사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사립대 교수)를 가지는 이상, 공직자등이 아닌 지위에 기해서 받은 금품등이라거나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음
 - ※ 이중지위자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높은 청렴성과 사명감을 가지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

사례 14 공직자들의 이중지위(변호사이자 비상임위원)

Q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이면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甲이 행정심판과 무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후, 의뢰인 A로부터 승소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150만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로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甲이 받은 150만원 상당의 시계 선물은 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공직자 등)의 지위에 기하여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지위에 기하여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甲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므로(제11조제1항제1호), 甲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공직자등이 아닌 변호사로서의 이중지위를 가짐
- 금품등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되므로(제8조제1항)
 - 비록 甲이 변호사라 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공직자등이 아닌 지위에 기해서 받은 금품등이라거나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음
 - 사안의 경우 甲이 받은 150만원 상당의 시계는 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서의 직무와 무관하게 형사사건 승소 확정 판결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Q

- (1)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2)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제4호에 따라 법인·단체가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도 공무수행사인인가요?
- (3)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경우, 수탁된 공무 외에 다른 업무와 관련하여서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A

- (1) ①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②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③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④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제11조제1항제1호내지제4호).
- (2)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적으로 수입·수탁 업무 종사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제11조제1항제2호·제4호).
- (3)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 금지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의 금지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제11조제1항).

사례 16 공무수행사인의 범위(2)

Q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 역시 공직자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법령”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외에 각종 조례, 고시, 내규 등도 포함되나요?

A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시행령), 국무총리령, 부령(시행규칙)이 포함되고, 상위법령에 위임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 고시, 훈령 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역시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도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제11조제1항제1호)

※ 일반적으로 ‘법령’은 법률,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 (헌재 2009. 7. 30. 2007헌바75 결정)

※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령’에 조례·규칙이 포함됨을 명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① 국가산업단지등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도에 중앙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1. 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정책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와 관련한 사항 등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장소적 적용범위

사례 17 속지주의, 속인주의 관련

Q

- (1) ① A외국기업 대표 B가 A기업이 제조·가공한 식품에 대한 인증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甲(한국국적)에게 한국에서 30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② A외국기업에 대한 취재를 하고 있는 외국 주재 특파원(한국국적) 乙에게 B가 외국에서 30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직무관련성이 인정됨을 전제)?
- (2) ○○국 재외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甲이 외국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거나, 국제기구, 외국대학 등에서 외부 강의등을 하고 1시간에 500만원의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 (1) ◆ 한국 공무원 甲은 한국에서 접대를 받았고, 특파원 乙은 외국에서 식사 접대를 받았으나 한국인이므로 속인주의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甲과 乙은 공직자등으로서 각각 직무와 관련하여 3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제21조).
- ◆ 또한 외국인 B가 외국에서 乙에게 식사접대를 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나, 한국에서 甲에게 식사접대를 한 것은 속지주의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2) ◆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의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제8조제3항제6호),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경우 3만원 범위 안에서 식사접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2호).
- ◆ 또한 외교관에 대해서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이 적용되나,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르므로,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수수하였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2]).



II

부정청탁의 금지 등

II 부정청탁의 금지 등

1.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

사례 18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

Q

고위 공무원 A가 친구인 민간기업체 임원 甲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했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아닙니다.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며(제5조 제1항), 민간기업체 임원 甲은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에는 민간영역 중 언론사와 사립학교 법인만 포함되고, 일반 민간기업체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민간기업체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음

사례 19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의 범위(1)

Q

지역주민 A가 지인인 ○○시청 건축과 과장 甲에게 관계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축허가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甲은 같은 과 소속 건축허가 담당 주무관 乙에게 증축허가를 하도록 지시하고, 乙이 이를 이행한 경우 甲, 乙,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 A는 토지형질변경의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甲은 건축과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2항 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乙도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2항 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의 의미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①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②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 ③ 내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받은 경우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봄
- 다만,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직책에 있는 공직자등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음(신고의무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우려)

사례 20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의 범위(2)

Q

A회사 직원 B가 지역유지인 사업가 C를 통해 ○○시청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甲에게 관계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구청 사업허가 담당공무원 乙에게 위 부탁을 전달한 경우 甲, 乙, A, B, C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 직원 B는 제3자(A회사)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2항).

※ '제3자(A회사)를 위한' 부정청탁(제23조제2항)임과 동시에 '제3자(C)를 통한' 부정청탁(제23조제3항)인 경우에는, 제23조제3항이 아니라 제23조제2항이 적용됨

- ◆ A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직원 B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24조).
- ◆ 사업가 C는 제3자(A)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2항).
- ◆ 甲은 담당공무원 乙의 업무처리 관련 결재권 또는 지휘감독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하지 않고, 제3자(A회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 乙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제5조제1항, 제23조제1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乙은 거절·신고의무 등을 이행할 경우(제7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의 의미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①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②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 ③ 내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받은 경우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봄
- 다만,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직책에 있는 공직자등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음(신고의무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우려)

2. 부정청탁의 방법

사례 21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1)

Q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관철나요?

A

청탁금지법상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금지되나(제5조제1항), 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 기회 보장 등을 위해 입법정책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에게 청탁하는 행위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되나(제5조제1항)**, 입법정책적으로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 한편,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 참고로,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제21조), 이해당사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 ※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사례 22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2)

Q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 공무원 甲에게 토지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甲을 직접 찾아가 허가를 내 줄 것을 청탁한 경우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 A는 토지형질변경의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甲은 거절·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토지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제5조제1항제1호)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

[직무수행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대응 방법]

- ▶(최초)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되고(제7조제1항), 신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반복)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제7조제2항),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대상(제21조)
- ▶(취지) 거절 의사 표시 및 신고 절차는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사례 23 제3자를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

Q

① 임직원이 “회사(법인)”를 위해 청탁을 하는 경우, ②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을 하는 경우, 제3자를 위하여 청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직접 자신을 위하여 청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A

① 회사(법인)와 임직원은 별개의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이며, 회사(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관련 부정청탁의 법적 효과는 회사(법인)에 귀속되므로, 임직원이 회사(법인)를 위해 청탁을 하는 것은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고, ② 부모의 아들을 위한 부정청탁 역시 부정청탁의 법적 효과는 제3자인 아들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되나(제5조제1항),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 과, 과태료 부과 대상인 ‘제3자를 통한(위한) 부정청탁’의 구별이 문제됨
-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
 - ※ 자녀를 위한 부정청탁의 경우 자녀가 성년인지 미성년인지를 불문하고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함
 - ※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대리인(부모)의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자녀)에게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4조 제1항), 역시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3.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 “법령을 위반하여”

사례 24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의 의미(1)

Q

‘법령을 위반하여’ 행위를 하도록 요청한 경우에 부정청탁이 성립하는 것이라면, 공직자등에게 어떠한 행위를 부탁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량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또는 ‘법대로’ 하여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지요?

A

형식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이 포함되고, 부정청탁 대상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도 포함되며, 각종 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절차법도 포함**됨
-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위반은 곧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음. 다만, 행정조직 내부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경우는 법령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무처리준칙 위반 자체가 상위법령 위반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경우라면 법령 위반에 해당**함
- 비례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과 같은 일반 법원칙은 개별 법령의 해석·적용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으나, 법령의 매개 없이 **일반 법원칙이 바로 법령을 위반하였는지의 판단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법령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는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제정한 규칙을 의미

사례 25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의 의미(2)

Q

건설업체 직원 A가 구청 인·허가 담당자 甲에게 '민원을 빨리 처리해 달라', 또는 '서둘러 허가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런 부탁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

- ◆ 형식상 '서둘러 허가를 해 달라'는 부탁이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관계 법령상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해줌)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 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 문의 등을 하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음(제5조제2항제4호)

사례 26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의 의미(3)

Q

공기업인 ○○공사 마케팅팀 팀장 甲이 친구 A로부터 ‘이번에 ○○공사 신입사원 채용에 아들이 응시했으나, 대학성적이나 영어점수가 부족하여 채용기준에 미달하겠지만 합격할 수 있게 잘 좀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사담당 직원 乙에게 A의 아들의 채용을 부탁한 경우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 ◆ 甲은 청탁을 받고 채용담당자 乙에게 부탁을 하였으므로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제5조제1항, 제23조제1항제1호)이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A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3항).

○ 부정청탁의 요건 :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 직무에 해당 + 법령 위반

- 채용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제5조제1항제3호의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등의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인사운영 원칙)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 및 소속직원의 선임·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운영 전반을 법령 및 정관·자체 규정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다만, 甲은 마케팅팀 팀장으로서, 채용관련 업무의 결재선상에 있거나 채용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청탁의 상대방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례 27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의 의미(4)

Q

지역주민 A가 ○○시청 소속 건축허가 담당공무원 甲에게 ‘이번에 어떻게든 증축허가를 꼭 받아야 하니, 잘 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한 경우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 ◆ 부탁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증축허가가 나도록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관계 법령상 증축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축허가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A의 부탁이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A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청탁한 경우로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甲은 거절·신고의무 등을 이행할 경우(제7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 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다만, ‘잘 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의 의미가 증축허가 절차나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질의하는 취지일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음(제5조 제2항제6호)

▶ 직무수행 공직자등은 부탁의 취지가 불명확하거나 부정청탁인지 여부가 애매할 때에는 부탁의 내용과 취지 등을 확인하여 문서화하고 청탁방지 담당관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사례 28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의 의미(5)

Q

100㎡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는 A는 ○○군청 담당 공무원 甲에게 '5㎡/일' 처리용량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습니다. A는 오수처리시설이 하수도법령에 따른 오수처리용량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구이자 같은 군청에서 근무하는 인사담당 공무원 乙을 통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甲에게 부탁한 경우 甲, 乙,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 A는 오수처리시설 신고의 이해당사자로서, 제3자인 乙을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 제1항, 제23조제3항).
- ◆ 乙은 제3자(A)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으로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제5조제1항, 제23조제1항제1호)이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甲은 거절·신고의무 등을 이행할 경우(제7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 아니지만, 부정청탁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해 준 경우에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부정청탁의 요건 :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 직무에 해당 + 법령 위반

- 법령상 요건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제5조제1항제1호의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며, 하수도법령상 오수처리시설 설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음

※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산정 방법(환경부고시 제2015-133호)'도 법령에 포함되며, 위 고시 상 100㎡ 규모의 일반음식점의 경우 '7㎡/일'의 오수처리용량에 해당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함

사례 29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의 의미(6)

Q

- (1) 지상파 방송사 보도국장인 甲은 대기업인 A주식회사 홍보팀장 B로부터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 회사 사주의 노조탄압행위와 관련된 내용의 방송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결국 그러한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 (2) 공무원이 친분을 이용해 기자에게 특정 기사를 게재하지 말 것을 부탁하거나 취재한 기사를 삭제하여 달라고 부탁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 (3) 언론사에 홍보성 기사 또는 자사 제품에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

방송을 막아달라는 요구내용, 특정 기사를 게재하지 말아 달라거나 삭제해달라는 요구내용,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는 요구내용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방송을 막아달라는 등의 요구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가 있을 경우 「형법」상 배임수증죄 등 별도 범죄의 성립 여지 있음

참고 판례

신문사의 지국장이 취재기사를 본사에 송고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목 인사례조로 금품을 교부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가 된다(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도1355 판결).

사례 30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의 의미(7)

Q

○○외국인학교 교사 乙은, 학부형 A로부터 아들 B(외국에서 6개월 거주)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같은 학교 입학처장 甲에게 B를 입학시켜줄 것을 부탁하였고, 甲이 B를 입학시킨 경우 甲, 乙, A, B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 외국인학교 입학 등 업무는 제5조제1항제10호의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며, 외국 거주 기간이 6개월 밖에 되지 않아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A는 제3자(B)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로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제10호, 제23조제2항).
- ◆ B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 ◆ 乙은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1항제1호).
- ◆ 甲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수행을 하였으므로,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이며, 징계 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입학처장 甲과 교사 乙은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다목)

○ 부정청탁의 요건 :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 직무에 해당 + 법령 위반

- 외국인학교 입학 등 업무는 제5조제1항제10호의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며,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상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이라는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 ①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을 말한다.

4. 부정청탁 대상직무

사례 31 인·허가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Q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 공무원 甲에게 토지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B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토지소유자 A의 친구 B는 다시 자신의 친구인 ○○군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 乙을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甲, 乙, A, B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토지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제1호).
- ◆ A는 제3자(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3항).
- ◆ B는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2항).

※ ‘제3자(A회사)를 위한’ 부정청탁(제23조제2항)임과 동시에 ‘제3자(乙)를 통한’ 부정청탁(제23조제3항)인 경우에는, 제23조제3항이 아니라 제23조제2항이 적용됨

- ◆ 乙은 제3자(A)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1항제1호).
- ◆ 甲은 거절·신고의무 등을 이행할 경우(제7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이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부정청탁의 요건 :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 직무에 해당 + 법령 위반
 - 형질변경허가는 제5조제1항제1호의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며,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토지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음
- 여러 명이 순차적으로 특정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모두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자로서 과태료 부과대상임

Q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A는 자신의 친한 친구인 의사 B가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고위공무원 A는 ◇◇중앙부처 의료자원정책과장 甲에게 ‘감경 사유가 없지만 의사 B에 대한 처분을 감경해 달라’며 의사 B 몰래 부탁한 경우 甲, A, B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 의료법령상 감경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 제2호).
- ◆ A는 제3자(B)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 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1항제1호).
- ◆ B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 ◆ 甲은 거절·신고의무 등을 이행할 경우(제7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부정청탁에 따라 처분을 감경해 준 경우에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부정청탁의 요건 :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 직무에 해당 + 법령 위반

- 처분 감경은 제5조제1항제2호의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며, 의료법령상 감경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음

Q

□□중앙부처 소속 국장 A의 자녀 B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자격소지자 제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국장 A는 자녀 B 몰래 면접위원인 인사과장 甲에게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인사과장 甲이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자녀 A가 합격한 경우 甲, A, B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 공직자등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제3호).
- ◆ A는 제3자(B)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1항제1호).
- ◆ B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 ◆ 甲은 국장 A의 부정청탁에 따라 면접 점수를 높게 주어 국장 A의 자녀 B를 채용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부정청탁의 요건 :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 직무에 해당 + 법령 위반

- 공직자등의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제5조제1항제3호의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며,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하여 공직자등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음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는 대상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 위반도 포함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Q

섬유 관련 개인사업을 하는 A는 경쟁업체에서 신소재 섬유 관련 특허 출원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특허출원 사건에 대한 특허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사무관 甲의 친구인 변리사 B에게 관련 특허 정보를 얻어 줄 것을 부탁하였고, 변리사 B는 사무관 甲에게 이를 부탁 하였으나 사무관 甲이 이를 거절한 경우 甲, A, B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 「특허법」등을 위반하여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제6호).
- ◆ 甲은 변리사 B의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 하였으므로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7조제1항).
- ◆ A는 제3자(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3항).
- ◆ B는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2항).

○ 부정청탁의 요건 :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 직무에 해당 + 법령 위반

- 특허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것은 제5조제1항제6호의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며, 「특허법」 등을 위반하여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음(제5조제1항제6호)

「특허법」 제226조(비밀누설죄 등)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A는 ○○국립대학교에서 시설 방수공사(공사금액 5천만원)가 확정된 사실을 알고, 해당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신의 친구 B를 통해 계약 담당 직원 甲에게 공사를 분할하여 공사금액을 2천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쪼개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서 건설사업자 A를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해 줄 것을 청탁하여 건설사업자 A가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된 경우 甲, B,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 국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하여 공사 및 금액을 분할하여 특정인을 수의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1항제7호).
- ◆ A는 제3자(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3항).
- ◆ B는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1항제1호).
- ◆ 甲은 B의 부정청탁에 따라 건설사업자 A를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 하였으므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부정청탁의 요건 :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 직무에 해당 + 법령 위반

- 계약 당사자 선정 등은 제5조제1항제7호의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며, 국가 계약법령 등을 위반하여 공사 및 금액을 분할하여 특정인을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음(제5조제1항제7호)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Q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乙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甲에게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고 청탁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甲, 乙,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 보조금법령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 지급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제8호).
- ◆ A는 제3자(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3항).
- ◆ 乙은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1항제1호).
- ◆ 甲은 乙의 부정청탁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아닌 A에게 보조금을 지급 하였으므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부정청탁의 요건 :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 직무에 해당 + 법령 위반
 - 보조금 지원 등은 제5조제1항제8호의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며, 보조금 법령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 지급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음
- 지방의회 의원 乙은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나, 특정 개인의 특혜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로 보기 어려움(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
 - ※ ‘공공의 이익’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을 의미
 - 또한, 乙이 전달한 사항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고충민원’ 으로 보기도 어려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Q

A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입원을 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접수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 자신의 친구이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 甲의 친구 B를 통해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원무과장 甲은 접수 순서를 변경하여 대기자 A가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甲, A, B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 입원순서를 접수 순서대로 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여 먼저 입원시키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제9호).
- ◆ A는 제3자(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3항).
- ◆ B는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2항).
- ◆ 甲은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접수 순서를 변경하여 해당 병원에 대기자 A가 우선하여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부정청탁의 요건 :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 직무에 해당 + 법령 위반

- 국립대학교 병원은 학교법인(학교) 소속기관으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입원 순서를 접수 순서대로 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여 먼저 입원시키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음(제5조제1항제9호)

Q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B는 2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에서 75점을 받았고, 해당 학교 국어교사였던 B의 아버지 A는 자녀 B가 모르게 수학점수를 조금만 올리면 내신등급이 올라갈 것을 알고 동료 수학교사 甲에게 수학점수를 올려 줄 것을 부탁함에 따라 성적을 올려 준 경우 甲, A, B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 학교 성적을 올려 달라는 청탁은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제10호).
- ◆ A는 제3자(B)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1항제1호).
- ◆ B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 ◆ 甲은 A의 부정청탁에 따라 자녀 B의 성적을 올려주었으므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부정청탁의 요건 :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 직무에 해당 + 법령 위반
 - 각급 학교의 성적 처리 등은 제5조제1항제10호의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며, 학교 성적을 올려 달라는 청탁은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음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는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형법」 등의 일반 법령위반도 포함하며, 성적을 올려 달라는 청탁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려움

참고판례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아버지가 성적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교사에게 부탁하여 딸의 시험성적을 조작한 사례에서, 「형법」상 교장의 내신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판시(울산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고단899 판결)

Q

아버지 A는 자신의 아들 B가 병역 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고 서울 관내에서 사회복지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병무청 홍보담당 간부 乙을 통하여 병역 판정검사장의 군의관 甲에게 아들 A가 병역 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A가 모르게 청탁한 경우 甲, 乙, A, B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 병역법령상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위반하여 보충역으로 신체등위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 제11호).
- ◆ A는 제3자(B)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2항).

※ ‘제3자(B)를 위한’ 부정청탁(제23조제2항)임과 동시에 ‘제3자(乙)를 통한’ 부정청탁(제23조제3항)인 경우에는, 제23조제3항이 아니라 제23조제2항이 적용됨

- ◆ B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 乙은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1항제1호).
- ◆ 甲이 거절·신고의무 등을 이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지만(제7조제1항, 제2항), 부정청탁에 따라 4급 보충역 판정을 해 준 경우에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부정청탁의 요건 :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 직무에 해당 + 법령 위반

-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등은 제5조제1항제11호의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며, 병역법령상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위반하여 보충역으로 신체등위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음(제5조제1항제11호)

Q

○○파출소 순경 甲은 관할 지역 내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가 운전 중이던 A에 대해 호흡기 측정을 하자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0.08%로 측정되었는데, 최근 10년 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는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적발 사실을 제발 눈감아 달라고 부탁했고 甲이 이를 묵인한 경우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단속 결과에 따른 적발 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제13호).
- ◆ A는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의 이해당사자로서,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가 A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甲은 A의 부정청탁에 따라 적발 사실을 묵인해 주었으므로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 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부정청탁의 요건 :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 직무에 해당 + 법령 위반

- 단속 결과 묵인 등은 제5조제1항제13호의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단속 결과에 따른 적발 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음(제5조제1항제13호)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

5.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사례 4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제1호)

Q

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甲에 대해 입법(법률 제·개정)을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

- ◆ 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甲에 대해 법률의 제·개정을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제1호부터 14호까지 열거된 부정청탁의 대상 직무로 보기 어려워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한편, 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甲에 대해 법률의 제·개정을 제안·건의하는 행위가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과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라면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습니다(제5조제2항제1호).

사례 42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2호)

Q

민원인 A가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허가 통지를 받자, ○○구청 민원실 앞에서 건축허가를 내 달라고 피켓팅 시위를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A의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제5조제2항제2호).

- ‘공개적으로’ 는 물리적·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 청탁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
 -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켓 시위 또는 TV·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한 요구는 공개적인 요구에 해당

사례 43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제3호)(1)

Q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감면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甲을 통해 구청의 영업정지 업무 담당자 乙에게 영업정지 기간 감면 민원을 전달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 ◆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면해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제2호).
- ◆ 甲은 제3자(A)를 위하여 공직자등(구청 담당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해당되므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제5조제1항, 제23조제1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A는 제3자(국회의원)를 통하여 공직자등(구청 담당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되므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3항).
- ◆ 乙은 거절·신고의무 등을 이행할 경우(제7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국회의원 甲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제3자 A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것이나, 공익적 목적 보다는 **특정인의 개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로 보기 어려움**(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

※ ‘공공의 이익’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을 의미

사례 44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제3호)(2)

Q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중 하나인 제5조제2항제3호의 '시민단체 등'에 법으로 정한 법정단체(예를 들어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가 포함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법정단체도 제5조제2항제3호의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로서 제재대상 아님(제5조제2항제3호)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에 준하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각종 협회 등 직능단체, 이익단체, 공인된 학회 등은 위 예외사유에 포함될 수 있음

사례 45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등(제4호)

Q

민원인 A는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구청에 증축 허가를 신청하였고, 자신의 친구인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甲을 통해 진행상황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진행상황에 대한 확인·문의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제5조제2항제4호),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건축법령상의 건물 증축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나(제5조제1항제1호), 증축허가 관련 업무의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문의를 한 것은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제5조제2항제4호)

사례 46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제7호)

Q

제5조제2항제7호의 ‘사회상규’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요?

A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상규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그 개념과 판단 기준은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있으므로, 적용과정에서 불명확성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대법원은 일관되게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 아래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등 참조)
- 헌법재판소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부정청탁금지조항의 사회상규도 위 대법원 판결과 달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 복잡한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모든 상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열거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청탁 유형의 하나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를 규정한 것은 입법기술상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고 판시(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결정)
- 또한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소원 사건에서 “부정청탁금지조항에 규정된 ‘부정청탁’, ‘법령’, ‘사회상규’ 라는 용어가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어느 정도 가치 판단이 필요한 일반개념이지만, 부정청탁금지조항의 입법배경 및 입법취지와 관련 조항 등을 고려한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충분히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고 판시

‘사회상규’의 판단기준 관련

- ▶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①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④긴급성, ⑤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6. 부정청탁의 처리절차

사례 47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들의 거절·신고의무

Q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는 ○○군청 담당 공무원 甲에게 토지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군청 문화재 담당 공무원 乙을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였으나 甲이 거절하자, 다시 ○○군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 丙을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였고, 이에 甲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 甲, 乙, 丙,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 A는 제3자(乙, 丙)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3항).
- ◆ 乙, 丙은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각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제5조제1항, 제23조제1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甲은 乙의 최초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제7조제1항), 丙이 재차 부정청탁을 하자 乙의 부정청탁과 丙의 부정청탁이 동일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였으므로(제7조제2항),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인·허가는 제5조제1항제1호의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며, 개발제한구역 법령상 토지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제5조제1항제1호)

사례 48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Q

A건설(주) 소속 직원 B가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건축법령상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 甲에게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담당공무원 甲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건설(주) 소속 직원 C가 다시 같은 내용의 청탁을 담당공무원 甲에게 한 경우 甲, A, B, C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 B와 C는 제3자(법인)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각각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2항).
- ◆ A건설은 직원 B, C가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24조).
- ◆ 甲은 직원 B가 최초로 한 부정청탁에 대해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법상 의무를 이행하였으나(제7조제1항), 직원 C로부터 거절의사를 표시한 부정청탁과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으므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제7조제2항),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제21조). 만약 부정청탁에 따라 건축허가를 해 줄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합니다(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 부정청탁의 요건 :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 직무에 해당 + 법령 위반
 - 건축허가는 제5조제1항제1호의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며, 건축법령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음
- 동일한 부정청탁인지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자등을 기준’ 으로 부정청탁 내용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로 판단
 - 甲은 같은 A회사 소속 임직원 B, C로부터 내용이나 사실관계에 본질적 변화가 없는 청탁을 받았으므로 동일한 부정청탁에 해당

사례 49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Q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할 경우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A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는 점, 소속기관장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음(제7조 제7항)
 - 이는 공직자와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반복되는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함
 - 다만, 일률적으로 공개 시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의 내용, 공개 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공개 여부를 공공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행정처분 현황 등을 공개하는 입법례 증가 추세]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 ▶ 「식품위생법」 :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수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



III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Ⅲ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1. 수수 금지 금품등

가. 제재기준 관련

사례 50 1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제재수준이 정당한지 여부

Q

100만원을 기준으로 101만원이면 형사처벌, 100만원이면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 그 기준이 정당한가요?

A

- ◆ 100만원 기준은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을 반영하고,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처벌 대상의 합리적 기준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 ◆ 또한 동일하게 100만원 초과 금품 제공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다른 입법례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하

[참 고]

- ▶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서는 기부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이하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당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동일인' 과 '1회'

사례 51 '동일인' 및 '1회' 의 의미

Q

○○도 턴키심사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A건설회사(주)의 설계가 심의대상으로 상정되었는데, 심의 1주일 전 A건설회사(주) 직원 B는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건축사 甲과 점심을 먹고 20만원을 결제하였고, 같은 날 오후 직원 C는 甲과 골프를 친 후 그린피 50만원을 결제하였으며, 같은 날 저녁 직원 D는 100만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접대하고 택시비를 하라며 30만원을 甲에게 준 경우, 甲, A, B, C, D는 청탁금지법상 어떤 제재를 받나요?

A

- ◆ 甲은 B, C, D로부터 금품등을 받았으나, 금품등의 출처는 A회사 이므로, 동일인(A회사)으로부터 115만원 상당의 금품등(점심식사 10만원 + 그린피 25만원 + 저녁식사·술 50만원 + 택시비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음식물·주류 등의 접대·향응을 받은 경우 실제 접대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각자의 소요 비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 또한, 甲이 B, C, D로부터 금품등을 받은 행위는 같은 날 근접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시간적 계속성·근접성이 인정되어 1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 甲은 A회사로부터 1회 115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형사 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 ◆ B, C, D는 甲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각각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각자 제공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금품등 제공 금지의무가 부과된 제8조제5항의 '누구든지'에는 실제 제공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연인만 포함되고, 법인은 제외

※ B, C, D가 상호 의사연락 하에 공동으로 제공행위를 하였다면, 「형법」상 공동정범(1회 100만원 초과 제공)으로서 모두 형사 처벌될 수 있음

- ◆ A회사는 B, C, D가 공동정범이 아닐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세 개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나(공동정범으로 인정될 경우 1개의 벌금 부과 대상), 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24조).

- 건축사 甲은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으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제11조제1항제1호)
- 동일인 여부는 금품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동일인’은 금품등의 출처가 어디인지가 중요하므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될 수 있음
-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판단하며,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

Q

○○공공기관 과장 甲과 해당 공공기관 서울 소재 사무소장 乙은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A회계법인의 대표 B와 함께 식사를 한 후 B가 식사비용 60만원을 계산하였고, 같은 날 甲, 乙은 B와 함께 술을 마시고 B가 술값으로 300만원을 계산한 경우 甲, 乙, A, B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A

- ◆ 공공기관 직원 甲과 乙이 직무관련자인 대표 B로부터 같은 날 접대 받은 식사와 술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으므로 “1회”로 볼 수 있습니다.
- ◆ 甲, 乙은 B로부터 각 120만원(식사비용 60만원/3명 + 술값 300만원 /3명)의 접대를 받았으므로, 각각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각각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B는 1회 120만원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판단하며,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
- 음식물·주류 등의 접대·향응을 받은 경우 실제 접대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각자의 소요비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참고로,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는 양벌규정의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A회계법인은 대표 B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책되기 어려움

참고판례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바, ... 「산지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위 양벌규정에 근거한 형사처벌이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4817 판결 등 참조).

Q

○○중앙부처 국장 甲은 ①5월경 □□대기업 임원인 대학 동창 A로부터 70만원 상당의 골프 라운딩과 식사 접대를 받았고, ②같은 해 7월경 5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로 받았는데, 甲과 A는 아무런 직무 관련이 없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 甲은 A로부터 ①5월에 70만원 상당의 접대, ②7월에 50만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했는데, 각 수수행위의 시간적 근접성·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①과 ②를 “1회”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 ◆ 甲은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두 차례 받았으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A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에게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두 차례 제공하였으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 역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판단하며,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
- 1회당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할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청탁 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제8조제2항)

Q

○○구청 위생과 공무원 甲은 ○○구청 관할지역에서 요식업을 하는 A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① 9월초 20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 ② 9월말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각각 받았고, ③ 10월초 15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④ 10월말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각각 받은 경우,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 甲은 A로부터 ① 9월초 20만원 상당의 접대, ② 9월말 15만원 상당의 선물, ③ 10월초 15만원 상당의 접대, ④ 10월말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했는데, 각 수수행위의 시간적 근접성·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① ~ ④를 '1회'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 ◆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4회에 걸쳐 각 100만원 이하의 접대 및 선물을 받았으므로, 4개의 과태료(각 수수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 ◆ A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4회에 걸쳐 각 100만원 이하의 접대 및 선물을 제공하였으므로, 4개의 과태료(각 제공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Q

○○중앙부처 甲국장은 해당 부처 산하 기관장 A(직무관련성 있음을 전제)로부터 2만원 상당의 식사대접을 받았습니다. 3만원을 넘지 않는 식사를 했지만, 식사 뒤 산하 기관장 A가 택시비로 하라면서 甲에게 20만원을 주었고, 甲이 이를 수수했을 경우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산하기관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기관임)

A

- ◆ 甲은 식사대접을 받은 뒤 바로 A로부터 택시비로 20만원을 받았으므로, 시간적·장소적 근접성과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어 식사접대 행위와 택시비 제공행위를 1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 甲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A로부터 1회 22만원(20만원+2만원)을 받았으므로,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A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에게 22만원을 제공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甲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 (제2조제2호가목)
-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판단,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
 - 음식물 가액은 3만원 이하지만, 식사대접 행위가 택시비 제공행위와 함께 1회로 평가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수 가액에 포함됨

다. '각출' 문제

사례 56 각출 문제(1)

Q

○○중앙부처 산하 공기업 직원 A, B는 5만원씩 개인자금으로 각출하여 새로 부임한 ○○중앙부처 총괄과장 甲에게 10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 과장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하였으므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 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공기업 직원 A, B는 각 5만원씩(선물 5만원 범위 내)을 냈으나, A, B가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A, B는 각자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금액인 1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총괄과장 甲과 산하기관 직원 A, B 간 직무관련성 인정될 수 있음
- 각출이나 유사 사례의 경우, 각출한 사람들의 자금의 출처가 동일한지 여부, 제공자들과 수령자와의 관계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수령자 기준으로 1회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제공자들이 위반행위 실현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자와 수령자의 제재수위를 결정함이 상당함
- A, B는 각자는 자신의 자금으로 5만원씩만 냈더라도, 둘이 합하여 가액 기준을 초과한 금품등을 甲에게 제공함으로써 A, B가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것이므로 A, B 모두 10만원 상당의 선물 제공과 관련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고, 甲도 1회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하였으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함(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사례 57 각출 문제(2)

Q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중학교 1반 학생 30명의 학부모들이 각 2만원씩 각출하여 60만원 상당의 선물을 담임교사 甲에게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 교사 甲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60만원 상당의 선물은 가액한도 5만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甲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 ◆ 학부모들은 1인당 2만원씩(선물 5만원 범위 내)을 냈으나,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학부모들이 모두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학부모들 각자는 교사 甲에게 제공한 금액인 6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교사는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다목)
- 학생 지도, 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담임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

라. 회계연도

사례 58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Q

○○시청 취득세 담당 공무원 甲은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 A로부터 3월부터 12월까지 합계 35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았는데, 세무사 A는 공무원 甲이 근무하는 ○○시청과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없으며 어떤 청탁도 하지 않은 경우,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과 이를 제공한 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을 불문하고 모두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1항).
- ◆ 甲은 A로부터 회계연도 합계 35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8조제2항, 제22조제1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A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에게 회계연도 합계 35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마.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사례 59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1)

- Q**
- (1) ○○중앙부처 국장 A가 같은 부처 내 인사과장 甲에게 2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보내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 (2) ○○공공기관 팀장 A가 그동안 일하느라 수고한 팀원 甲, 乙, 丙과 함께 회식을 하고 식사 및 주류 비용 합계 20만원을 낸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 A**
- (1)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A로부터 2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8조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선물을 받은 甲과 이를 제공한 A 모두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 (2) 甲, 乙, 丙이 직무와 관련하여 A로부터 1인당 5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甲, 乙, 丙,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1 관련]

- 인사과장 甲과 국장 A 간 직무관련성 인정될 수 있음
 - 인사과장은 해당 부처 내 공무원의 전보·승진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인사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①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②직제 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③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④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⑤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참고 : 「형법」상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관련 판례]

- ▶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며,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도5753 판결 등 참조)
- ▶ 구체적인 행위가 공직자등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직자등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등 참조)
- ▶ 직무관련성의 판단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 2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은 선물 5만원 가액 한도를 초과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이 아님(제8조제3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 선물이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제8조제3항제1호)

[질문2 관련]

○ 팀원 甲, 乙, 丙과 팀장 A간 직무관련성 인정되기 어려움

- A가 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서 팀원 격려 차원에서 1인당 5만원 상당의 회식비를 내는 것이 팀원들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

※ 설사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팀장이 지급한 회식비는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제8조제3항제1호)

사례 60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2)

Q

A 중앙부처 장관 B가 예산을 총괄하는 甲중앙부처 장관 乙과 식사를 하면서 예산 관련 업무협의를 하는 경우,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는 할 수 없나요?

A

乙과 B가 예산 관련 업무협의를 하면서 식사를 함께 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3만원 이하 식사접대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가능하나(제8조제3항제2호),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장관 乙과 장관 B 간 직무관련성 인정될 수 있음

- 예산을 총괄하는 중앙부처 장관 乙은 예산 관련 업무에 대한 결재권을 가지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 인정됨

Q

- (1) ○○공공기관 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무관 A와 甲(둘은 입사 동기)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으로서 함께 술과 식사를 하였고, A가 식사대금 총 8만원을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2)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담당부서에서 일하는 사무관 乙과,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인 ○○시청에서 청렴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B는 공채 시험 동기로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 중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B가 총 10만원을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 (1)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A로부터 4만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甲,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2) 乙은 직무와 관련하여 B로부터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식사 접대를 받은 乙과 이를 제공한 B 모두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1 관련]

- 같은 공공기관 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A와 甲간 **직무관련성 인정되기 어려움**
 - A가 입사동기이자 이웃주민인 甲에게 술과 식사를 사는 것이 甲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
 - ※ 甲과 A가 담당하는 업무내용, 甲이 업무처리 방향·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A가 甲의 직무수행에 따라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직무관련성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질문2 관련]

- 청렴도 측정 업무 담당 사무관 乙과,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에서 청렴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B간 **직무관련성 인정될 수 있음**

- 乙은 청렴도 측정 업무를 담당자로서 업무처리 방향·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점,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라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점,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 업무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여부는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판단기준이 아님

- 1인당 5만원 상당의 식사는 **음식물 3만원 가액 한도를 초과**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이 아님(제8조제3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Q

○○지방검찰청에서 형사부장으로 근무하는 甲검사는 주말에 서울에서 사법연수원 동기로 평소 친분관계가 있고 다른 지역에서 개업하여 활동하고 있는 A변호사와 식사하였고, A변호사는 현재 甲검사가 근무하는 형사부 관련 사건은 없지만 甲검사가 전에 근무하던 공안부의 사건을 수임한 적은 있었습니다. 식비 20만원 모두를 A변호사가 계산하면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검사 甲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변호사 A로부터 10만원 상당(20만원/2명)의 식사 접대를 받았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 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하여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 분할한 금액이 수수한 금품등에 해당 : 사안의 경우 총 음식접대비의 1/2로 산정

◆ A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甲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하였으므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변호사 A와 검사 甲 간 직무관련성 인정될 수 있음

- 검사는 변호사와의 관계에서 해당 검사실 및 소속 부서·소속 검찰청에서 현재 구체적인 사건이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거에 맡았던 직무 및 사건 관련 여부 혹은 장래 맡게 될 직무 및 사건 관련 여부, 검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변호사와의 사적 친분관계 존부,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음

※ 판사와 변호사의 관계, 판사와 검사의 관계, 세무공무원과 세무사의 경우 등도 유사

○ 10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으로서 3만원 이하의 금품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Q

- (1) ○○공공기관 직원 甲이 담당했던 인·허가 업무 완료 후, □□회사를 대리하여 인·허가 업무를 수행했던 ○○공공기관 출신의 A법무법인 변호사 B가 甲에게 식사(1인당 5만원)를 접대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 (2) 민원인 B가 ○○구청 직원 乙로부터 최종 민원회신결과를 받은 후 乙에게 민원처리에 대한 감사표시로 편지와 함께 B가 직접 생산하는 5만원 상당의 꿀을 보내 온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 (1) 인·허가 업무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인·허가 업무 담당자인 甲과 같은 기관 출신의 B변호사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1인당 5만원 상당의 식사는 음식물 3만원 상한액을 초과하므로(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 (2) 최종 민원회신결과를 받았다 하더라도 乙과 B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고, 5만원 상당의 선물은 5만원 가액 한도를 초과하지는 않으나, 乙과 B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된 선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과 B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 법 제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음
- 사안과 같이 인·허가 업무가 완료되었거나, 최종 민원회신결과를 받았다 하더라도 신청인 혹은 민원인과 업무 담당 공직자등과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음

사례 64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6)

Q

제약업체에 다니는 A, 초등학교 교사 甲,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乙은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나고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A가 식사대금 60만원을 모두 계산한 경우 甲, 乙,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甲과 乙은 제약업체 직원 A로부터 각각 20만원 상당(60만원/3명)의 식사를 접대 받았으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교사 甲과 공기업 직원 乙은 모두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나목, 다목)
- 제약업체 직원, 초등학교 교사,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Q

- (1) ○○언론사 편집국장 甲은 포럼에 참석한 후, 포럼회원 3명과 식사를 했습니다. 함께 식사한 회원 중 ○○언론사의 출입처인 □□공공기관의 직원 A가 저녁식사비 총 20만원을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하나요?
- (2) 방송국 PD 甲은 대학동기인 연예기획사 대표 A와 술을 마셨는데, 술자리에서 연애가 소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소속 연예인의 출연에 관한 청탁은 없었습니다. 다만 술값 30만원은 A가 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3) 일간지 연예부 기자 甲은 명절을 맞아 고향에 내려간 김에 고향 친구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와 식사를 하였습니다. A가 “오랜만에 고향에 왔으니 한 톱 쏘겠다”며 식사비 10만원을 낸 경우도 처벌대상인가요?

A

- (1) 언론사 편집국장 甲과 출입처인 공공기관 직원 A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1인당 5만원 상당의 식사는 음식물 3만원 가액 한도를 초과하므로(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 (2) 방송국 PD 甲과 연예기획사 대표 A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1인당 15만원 상당의 주류는 음식물 3만원 가액 한도를 초과하므로(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 (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가 고향친구인 연예부 기자 甲에게 식사를 사는 것이 甲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甲과 A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1 관련]

○ 언론사 편집국장은 기사 편집, 뉴스 제작 등과 관련하여 사실상 또는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 언론보도 내용에 따라 출입처인 공공기관은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 인정 가능**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취재·보도·평론·편집 관련 이해당사자, 출입처, 공공기관·기업 등 취재원, 광고주 등은 언론사 대표자·임직원과의 사이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하여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 분할한 금액**이 수수한 금품등에 해당 : 20만원 X 1/4 =5만원
- 甲은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 (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제21조)
- A는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 (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징계대상에도 해당(제21조)

[질문2 관련]

- 방송국 PD는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는 자로서, 방송내용 구성, 출연진 결정 등과 관련하여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소속 연예인의 방송 출연 여부 또는 방송 내용에 따라 연예기획사 대표는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 인정 가능**
- 甲은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 (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제21조)
- A는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 (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연예기획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제24조), 다만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는 양벌규정의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 14817 판결), 연예기획사가 대표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도 면책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질문3 관련]

- 법 제정취지가 금품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들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임

- 다만, 甲과 A가 담당하는 업무내용, 甲이 업무처리 방향·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A가 甲의 직무수행에 따라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직무관련성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Q

- (1) ○○감독원 은행감독국 직원 A가 ○○감독원에 출입한 적이 없는 언론사 경제부 기자 甲과 10만원(1인당 5만원)의 식사를 하고 계산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 (2) ○○감독원 공보실 직원 B가 과거 ○○감독원에 출입하였으나 현재는 ○○감독원에 출입하지 않는 언론사 사회부 기자 乙과 10만원 상당(1인당 5만원)의 식사를 하고 계산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 (1) 경제부 기자 甲은 ○○감독원 은행감독국 직원 A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1인당 5만원 상당의 식사는 음식물 3만원 상한액을 초과하므로(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 (2) 과거 ○○감독원 출입 기자였던 乙기자와 ○○감독원 공보실 직원 B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1인당 5만원 상당의 식사는 음식물 3만원 상한액을 초과하므로(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乙과 B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 법 제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음
- 甲·乙과 A·B가 각각 담당하는 업무내용, 甲·乙이 업무처리 방향·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A·B가 甲·乙의 직무수행에 따라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음

Q

- (1) 친한 교수들 간, 같은 전공 교수들 간, 교무처장을 비롯한 보직교수와 평교수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요?
- (2) 특정 과목 수업을 하는 선생님과 수업을 듣는 학생(학부모) 간, 학급 담임교사와 해당 학급 학생(학부모) 간,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요?

A

- (1)
 -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친한 교수들, 같은 전공 교수들 사이에서는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 그러나, 교무처장을 비롯한 보직교사와 평교수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2)
 - ◆ 과목 선생님, 담임교사, 지도교수와 학생(학부모)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선생님이 타 학교로 전출을 갔거나, 학생이 졸업을 한 경우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법 제정취지가 금품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의 판단은 공직자들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임
- 교무처장을 비롯한 보직교수의 경우 신입교수 선발, 교수 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며, 교수 인사·평가에 대해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점, 이러한 평가에 따라 평교수는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 인정될 수 있음**
- 선생님이나 지도교수의 경우 학생에 대한 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며, 성적, 학위수여 여부 등에 대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점, 학생이나 학부모는 선생님의 평가에 따라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 인정될 수 있음**

Q

○○사립초등학교에서 과학실에 비치할 교구를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과학교구상 A가 해당 초등학교 과학교사 甲에게 '아이들 가르치느라 수고가 많다'며 4만원 상당의 선물을 사 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 ◆ 사립초등학교 과학교사가 교구 구매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으나, 과학교사는 교구사양이나 제품군을 지정하는 등 업무처리 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점, 교구상은 과학교사의 영향력 행사에 따라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甲과 A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4만원 상당의 선물은 선물 5만원 가액 한도를 초과하지는 않으나, 甲과 A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된 선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 A는 선물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제8조 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甲은 선물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제8조 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 대상에도 해당(제21조)

Q

대학원생 A는 박사학위 논문 심사 후 한정식 집에서 논문심사 교수들에게 1인당 7만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접대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 인가요?

A

- ◆ 논문심사 교수들은 논문에 대한 심사, 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며, 논문 심사 통과 여부와 관련하여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논문심사 결과에 따라 대학원생은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수들과 A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7만원 상당의 식사는 음식물 3만원 가액 한도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박사학위 논문 심사 통과를 부탁하는 취지로 식사를 접대한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된 음식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수들과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 A는 직무와 관련하여 1인당 7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하였으므로, 식사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논문심사 교수는 직무와 관련하여 1인당 7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받았으므로, 식사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 대상에도 해당(제21조)

바. 금품등 가액 평가 문제

사례 70 집에서 식사를 접대한 경우 음식물 등 가액 평가

Q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소송을 대리하는 A법무법인 대표 B는, 소송 사건을 맡겨준 데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소송 담당 과장 甲과 소속직원 乙, 丙을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을 접대한 경우, 음식물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면 되나요?(1인당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전제)

A

- ◆ 식사초대 시 음식물 등 가액평가는 재료비 구입 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다고 봄이 상당하며, 가액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 ◆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하여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 분할한 금액이 1인당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안의 경우 B, 甲, 乙, 丙이 함께 식사를 하였으므로, 총 음식 접대비의 1/4을 1인당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甲, 乙, 丙은 공직자등에 해당하고(제2조제2호나목), 소송 담당과장 및 직원 이므로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A법무법인 대표 B와는 직무관련성도 인정될 수 있음(제8조제2항)

○ 1인당 식사 접대 가액이 3만원 초과할 경우,

- 甲, 乙, 丙은 직무와 관련하여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를 받았으므로, 각각 음식물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제21조)
- B는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를 하였으므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A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제24조), 다만 법인 대표자의 행위는 양벌규정의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 14817 판결), A법인이 대표 B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도 면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1인당 식사 접대 가액이 3만원 이하일 경우,

-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등 목적이 인정될 경우, 甲, 乙, 丙, A, B 모두 청탁 금지법상 제재대상 아님(제8조제3항제2호)

사례 71 비매품인 VIP 초청권의 가액 평가

Q

○○증양부처 甲심의관은 대학 동창이자 로펌에 근무하는 친구 A변호사로부터 유명 피아니스트인 A의 아내의 피아노 독주회 VIP초청권 4장을 선물받았는데(甲과 A는 직무관련성 없음), 해당 VIP초청권은 비매품이라 시장가격은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VIP 초청구역은 R석 보다 좋은 좌석으로 배정되어 있었고, R석의 입장권은 30만원에 판매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심의관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 ◆ VIP초청권은 R석 보다 좋은 좌석으로 배정되므로 R석의 입장권이 30만원에 판매되었다면 VIP초청권 1장당 통상의 거래가격은 최소 30만원은 넘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甲심의관은 1회 100만원을 초과(30만원×4)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甲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이상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A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 금품등의 가액은 제재의 종류(형사처벌과 과태료)를 구분하는 기준이고, 과태료 부과액 산정을 위한 기준임
- 甲심의관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가목)
- 금품등의 가액은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함

Q

○○중앙부처 甲차관은 재력가 친구 A가 있었는데(직무관련성 없음을 전제), A가 사업상 해외 출장을 갔다 오는 길에 공항 면세점에서 200만원(국내 판매시가 350만원)을 주고 와인 한 병을 사서 귀국한 후, 甲차관과 함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A가 면세점에서 구입한 200만원 상당의 와인을 가져와서 함께 마셨습니다(식사 대금은 각자 결제). 이 경우 甲차관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 ◆ 와인의 국내 판매시가가 350만원이라 하더라도, 면세점에서 200만원에 구입한 영수증이 있다면 와인 가액은 200만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 그렇다면 甲은 100만원 상당의 와인을 제공받은 것이나, 甲과 A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甲과 A 모두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반면, 실제구매가격(200만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 ◆ 이 경우 甲은 1회 175만원 상당의 와인 접대를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A는 공직자등에게 175만원 상당의 와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역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없으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
-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한 경우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소비된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甲차관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가목)

사례 73 식사접대를 받은 사람 수에 대한 판단의 문제

Q

공직유관단체 과장 甲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기업(일반 사기업에 해당)의 부장 A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았다. 식사비로 20만원이 나왔지만, 두 사람은 사실과 달리 함께 식사한 인원이 10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 식사 인원이 10명이 아니라 2명인 경우라면,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A로부터 10만원 상당(제8조제3항제2호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의 식사 접대를 받았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또한, A는 공직자등인 甲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하였으므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 반면, 객관적 자료 등에 따라 식사 인원이 10명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해당하나(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한 경우, 금품 등 가액은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실제 식사 인원이 몇 명인지 등에 관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판단해야 할 것임
- 공직유관단체 과장 甲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나목)
- 甲과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기업의 부장 A간에는 **직무관련성 인정**될 수 있음

사례 74 동일인으로부터 음식물, 선물, 부조금을 함께 받은 경우

Q

동일인으로부터 음식물, 선물, 부조금을 함께 받은 경우 어떤 가액기준이 적용되는지요?

A

동일인으로부터 부조금, 선물, 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각각의 가액을 모두 합산하되, 이 경우 수수가 허용되는 가액의 상한액은 1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 17조 관련)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비고

-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사례 75 골프접대의 가액 평가(1)

Q

공무원에게 골프접대는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A

- ◆ 공무원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골프접대는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 공무원과 전혀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이라면, 1회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골프접대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골프접대비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을 불문하고(제8조제1항) 골프접대를 받은 공무원 및 공무원에게 골프접대를 한 자 모두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제22조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제3호)

○ 골프접대비가 1회 100만원 이하일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제8조제2항) 골프접대를 받은 공무원 및 공무원에게 골프접대를 한 자 모두 골프접대비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제23조제5항제1호, 제23조제5항제3호)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

- ▶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음

Q

건설 관련 중앙부처 국장인 甲은 주말에 부실건설사로 의심되어 조사를 하고 있는 A건설회사의 임원 B, C, D와 함께 수도권에 있는 골프장에서 법인 무기명 회원권으로 골프를 치고 각자 비용을 5만원씩 나누어 냈지만, 위 골프장의 회원이 아닌 일반인의 주말 골프비용은 25만원 정도인 경우 甲, A, B, C, D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 골프접대의 가액은 그린피의 시가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20만원 상당(골프비용 시가 25만원 - 甲이 지출한 비용 5만원)의 골프 접대를 받았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B, C, D는 공무원 甲에게 2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하였으므로, 각각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 A건설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B, C, D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24조).

- 중앙부처 국장 甲은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가목)하고, 건설 관련 중앙부처 국장인 甲과, 부실건설사로 의심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A건설회사의 임원 B, C, D간에는 직무관련성도 인정됨(제8조제2항)

사례 77 음식물 3만원 초과 부분 더치페이인 경우 가액 평가

Q

A업체의 부장 B와 팀장 C는 공공기관의 직원 3명과 오찬을 갖게 되었는데(직무관련성이 있음을 전제), 1인당 5만5천원이 나왔습니다. B부장은 음식물접대 허용 상한액이 3만원이므로 15만원을 결제했으며, 1인당 5만5천원 중 3만원을 넘는 2만5천원 부분은 오찬 참석자 각자가 더치페이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나요?

A

3만원 초과 부분은 각자 더치페이 했으므로, 음식물 접대 허용 상한액인 3만원 범위 내에서 식사 접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제재대상이 아닙니다(제8조제3항제2호).

- 청탁금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실제 더치페이한 부분에 대한 현금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당연히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며, 영수증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가액 범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 A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이므로 직무관련성 인정됨

Q

A회사에서 공무원 甲의 배우자 乙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어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되나요? 직원채용 과정에서 응시생의 배우자가 공무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요?

A

- ◆ 공무원 甲의 배우자 乙에 대한 취업제공이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방편이 아니라, 회사 채용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정당하게 채용한 것이라면 채용과정에서 응시생의 배우자가 공무원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 다만, 공무원 甲의 직무가 A회사와 관련되고, 공무원 甲의 배우자 乙에 대한 취업제공이 공무원 甲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방편에 불과한 경우, 이러한 취업제공은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되어 제8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 등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취업제공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금품등’에 해당(제2조 제3호다목)
- 공직자등 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배우자에게 취업제공을 금지
 - 공직자등 본인이나 그 배우자 외의 자녀, 부모 등의 가족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정당한 취업제공인 경우 취업제공 및 그에 따라 수령한 급여 등은 모두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제8조제3항제3호)

사례 79 과도한 이자율의 가액 평가

Q

① 공직유관단체 임원 甲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A로부터 1억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일주일 후에 갚는 경우, 또는 ② A가 甲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현저히 낮은 이자만 받고 빌려주는 경우, 甲이 A로부터 '금품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① 금전을 무상으로 차용한 경우 수수한 금품등은 금융이익 상당액(금융기관 대출이율 또는 법정이율)이고, ② 현저히 저리로 차용한 경우는 대출이율이나 법정이율과 약정이율의 차액 상당액입니다(제2조제3호다목).

- 甲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 (제2조제2호나목)
- 가액평가 결과 100만원 초과한 경우
 - 甲과 A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을 불문하고(제8조 제1항)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제22조제1항 제1호, 제22조제1항제3호), 甲은 징계대상에도 해당(제21조)
- 가액평가 결과 100만원 이하일 경우
 - 甲과 A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제8조제2항) 차액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제23조제5항제1호, 제23조 제5항제3호), 甲은 징계대상에도 해당(제21조)

사례 80 택배비, 부가가치세, 봉사료도 금품등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Q

- (1) 45,000원 상당의 선물을 서울에서 서울로 보낸 경우에는 49,000원(택배비 4,000원), 같은 선물을 서울에서 제주도로 보낸 경우에는 51,500원(택배비 6,500원)인데, 모두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선물에 해당하나요?
- (2) 2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접대하는 경우, 부가세(10%)를 포함하면 30,800원, 부가세를 제외하면 28,000원인데, 이러한 경우 음식물 가액평가 시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A

- (1) 택배비는 선물 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8조제3항제2호).
- (2) 부가가치세는 음식물 가격에 포함되어 표시되므로, 음식물 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택배비는 발송 지역·중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택배비를 선물 허용가액에 포함시킬 경우 발송 지역 등에 따라 청탁금지법상의 제재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물 가액 산정 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상당함

< 우체국 택배, 중량 2kg까지 기준 >

지역	택배비
동일지역	4,000원
타지역	5,000원
제주(익일배달)	6,500원

○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는 영업소 내·외부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손님이 실제 내야 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도록 규정

※ 봉사료는 영수증에 표시되는 경우에만 포함하여 가액산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 아.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한다)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사례 81 고의 없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Q

공기업 영업본부 직원 乙은, 영업본부장 甲으로부터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자는 전화를 받고 식당으로 가서 甲과 함께 있던 계약업체 직원 A와 함께 식사를 하고 A가 식사비용 60만원을 계산했는데, 乙은 A가 누구인지 몰랐고 영업본부장 甲이 식사비를 계산한 것으로 안 경우 甲, 乙,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乙은 계약업체 직원 A로부터 식사를 접대 받는 데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계약업체 직원 A로부터 40만원 상당의 식사(甲이 초대한 乙의 접대에 소요된 비용 포함)를 접대 받았으므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공직자등이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공직자등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 5294 판결)

◆ A는 직무와 관련하여 영업본부장 甲에게 4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하였으므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사례 82 여러 명의 공무원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가액 평가(1)

Q

A회사 직원 B가 공무원 甲, 乙, 丙에게 1인당 300만원씩 제공하기로 약속하였고, 甲, 乙, 丙은 상호 의사연락 하에 B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였는데, B는 총 900만원을 甲에게 제공하면서 乙, 丙에 대한 전달을 요청하였고, 그 후 甲, 乙, 丙이 300만원씩 나누어 가진 경우, 甲, 乙, 丙이 수수한 금품의 가액은 얼마로 보아야 하나요?

A

공무원 甲, 乙, 丙이 공모하지 않고 각자가 별개로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자 받은 300만원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상 제재수위를 결정하게 되나, 공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甲, 乙, 丙이 각각 받은 금품등 가액을 합산한 900만원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상의 제재수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Q

건축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A는 10명의 구청 토지 인·허가 업무 관련 공무원에게 각 99만원씩 총 990만원의 돈 봉투를 돌렸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 구청 공무원 10명이 공모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인당 99만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각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반면, 구청 공무원 10명이 상호 의사연락 하에 공동으로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10명 모두 「형법」상 공동정범으로서 99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 ◆ A는 구청 공무원 1인당 99만원의 금전을 제공하였으므로, 모두 10개의 과태료 부과대상(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구청 공무원 10명이 공동정범일 경우에는 A는 990만원을 제공한 자에 해당되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 구청 공무원 10명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가목)
- 구청 공무원 10명은 모두 토지 인·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므로 각각 건축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A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제8조제2항)

참고 판례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557 판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 상호 접대의 경우 공제·상계 문제

사례 84 상호 접대의 경우 공제·상계 여부 문제(1)

Q A회사의 직원 B(직무관련성 인정됨을 전제)는 공무원 甲과 술자리를 자주 하였으며, 술값을 나누어 내는 것이 번거로우니 한번은 B가 내고, 다음에는 甲이 내는 식으로 번갈아 가며 계산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B가 甲과의 술값 20만원을 모두 계산하였는데, 이 경우 甲, B는 각자 1/2씩 술값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A

- ◆ 공무원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10만원 상당(20만원/2명)의 술 접대를 받았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B는 공무원 甲에게 1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하였으므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 A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직원 B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24조).

- 돌아가면서 접대를 하거나, 접대 받은 액수만큼 다시 접대를 하는 경우
 - 접대를 받은 후 상대방에게 접대를 한 것은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금품등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제9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접대 받은 액수만큼 다시 접대를 하는 데 대한 공제·상계의 명백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 공제·상계 허용 시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이라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접대 가액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
- ※ 다만, 접대 받은 만큼 다시 접대를 했다는 사정 등은 법 위반행위 이후의 정황으로서 처벌 수위 결정시 참작사유가 될 여지는 있음

Q

○○공기업 경리담당 직원 甲은, 위 공기업과 계약관계가 있는 A업체의 대표 B와 여러 차례 만나 업무관련 협의를 하면서 1년 동안 총 320만원 상당의 식사를 B로부터 제공받았지만, 1년 동안 甲도 B에게 총 7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 甲, A, B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이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이상,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B는 공직자등인 甲에게 1년 동안 총 320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하였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 ◆ A업체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24조).

- 공기업 경리 담당 직원 甲은 공직자등에 해당하며(제2조제2호나목), 해당 공기업과 계약관계가 있는 A업체 대표 B와 공기업 경리담당 직원 甲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돌아가면서 접대를 하거나, 접대 받은 액수만큼 다시 접대를 하는 경우
 - 접대를 받은 후 상대방에게 접대를 한 것은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금품등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제9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접대 받은 액수만큼 다시 접대를 하는 데 대한 공제·상계의 명백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 공제·상계 허용 시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이라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접대 가액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
- ※ 다만, 접대 받은 만큼 다시 접대를 했다는 사정 등은 법 위반행위 이후의 정황으로서 처벌 수위 결정시 참작사유가 될 여지는 있음
- 참고로,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는 양벌규정의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A업체는 대표 B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책되기 어려움**(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4817 판결 등 참조).

Q

○○구청 사회복지과 공무원 甲이 사회복지사 A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접대 받았는데, 일주일 후 공무원 甲이 사회복지사 A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접대한 경우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 공무원 甲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사 A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으므로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A는 공무원 甲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접대하였으므로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돌아가면서 접대를 하거나, 접대 받은 액수만큼 다시 접대를 하는 경우

- 접대를 받은 후 상대방에게 접대를 한 것은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금품등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제9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접대 받은 액수만큼 다시 접대를 하는 데 대한 공제·상계의 명백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 공제·상계 허용 시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이라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접대 가액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

※ 다만, 접대 받은 만큼 다시 접대를 했다는 사정 등은 법 위반행위 이후의 정황으로서 처벌 수위 결정시 참작사유가 될 여지는 있음

Q

○○시청 과장 A는 평소 동호회 활동을 함께 하는 등 친분이 있는 감사과 직원 甲과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A가 1차 식사비용 총 10만원을 계산하자, 甲이 1차는 A가 샀으니 2차는 자기가 사겠다고 하면서 바로 같은 동네에 있는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2차로 술을 마시고 甲이 2차 술값 총 10만원을 계산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 ◆ 상호 접대에 따른 공제·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甲과 A의 상호 접대행위는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A가 1차를 냈으니 甲이 2차를 내기로 하는 등 실질적으로 한 장소에서 술과 식사를 하고 더치페이로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다만, 만일 甲이 1차로 3만원 상당, A가 2차로 15만원 상당을 제공하였다면, 甲은 A로부터 12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 감사과 직원 甲과 과장 A간 직무관련성 인정될 수 있음

- 甲이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과 관련하여, 감사과 직원은 예산 집행 감사, 복무점검, 징계 등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대해 소속 기관 임직원은 직접 불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는 점, 감사 업무의 처리방향·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점,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 인정될 수 있음
- A가 5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은 것과 관련하여, 타 부서 과장이라 하더라도 과장이라는 지위에 기해 같은 기관 내 직원들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 인정될 수 있음

○ 앞의 사례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호접대에 따른 공제·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상호접대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실질적으로 한 장소에서 식사 등을 하고 더치페이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을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제재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더치페이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임
- 사안의 경우, ① A의 甲에 대한 5만원 상당의 식사제공행위와 甲의 A에 대한 5만원 상당의 주류제공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해 있는 점, ② A가 1차를 냈으니 甲이 2차를 내기로 하는 등 식당 및 주점에서 각각 더치페이를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더치페이를 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어 甲과 A가 서로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경우 공제·상계를 허용한다고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탁 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아. 금품 등 수수 주체 문제

사례 88 기관이나 부서로 온 선물의 경우 수수 주체

Q

명절에 직무와 관련된 협회의 직원으로부터 기관이나 부서로 배송되어 온 선물은 받아도 되는지요?

A

- ◆ 만일, 선물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거나 선물의 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합니다.
- ◆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제2항에 규정된 신고·반환·거부의 의사표시 의무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직원 앞으로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이나 부서로 온 선물은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반환이나 신고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는 주체에 관하여 ‘공직자등’ 이라고 하여 법인이 아닌 자연인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됨

Q

A기업체 대표 B가 신문사 소속 특정 개인이 아닌 신문사 자체에 대한 협찬 명목으로 1,000만원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 ◆ 협찬 업무를 담당·처리하는 신문사 임직원이 신문사 자체에 대한 협찬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경우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에 따른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협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신문사 임직원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및 징계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제21조),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 ◆ 대표 B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A기업체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24조).

- 신문사에 대한 협찬을 받는 주체는 법인, 법인의 대표자, 임직원 등이 될 수 있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는 주체에 관하여 ‘공직자등’ 이라고 하여 법인이 아닌 자연인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자연인으로서의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가 어려울 수 있음
-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는 ‘공직자등’ 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 자연인을 의미(제2조제2호)
 - 비록 협찬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신문사 임직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소속 신문사의 이익을 위해 협찬을 받았더라도,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법 제정취지를 고려할 때, 실제 행위자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있음
- 참고로,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는 양벌규정의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A기업체는 대표 B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책되기 어려움(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4817 판결 등 참조).

Q

□□기업체 출입기자 甲은 ○○신문사 주최 행사 관련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줄 경품이 필요하자 □□기업체 대표 A로부터 행사에 필요한 음료와 스포츠 타올 등 2,000만원 상당의 물품의 협찬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받은 물품을 모두 행사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 ◆ 출입기자 甲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요구하였으므로,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및 징계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제21조),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 ◆ □□기업체 대표 A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A가 소속한 □□기업체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24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는 ‘공직자등’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 자연인을 의미(제2조제2호)

- 따라서, 출입기자 甲이 실제 협찬 물품 요구 등 행위자인 공직자등으로서 청탁금지법에 따른 제재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 비록 출입기자 甲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소속 신문사의 이익을 위해 협찬을 받았더라도,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법 제정취지를 고려할 때, 실제 행위자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있음

※ 협찬 받은 경품을 일반인 행사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수수한 금품등의 사용방법과 관련된 사후적 정황으로서 처벌 수위 결정 시 참작 사유에 불과

○ 참고로,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는 양벌규정의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기업체는 대표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책되기 어려움(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4817 판결 등 참조).

사례 91 학교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Q

- (1) A할머니가 평생 노점상을 하며 모은 5억원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甲사립대학교에 발전기금으로 주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2) 乙사립대학교 대학원 CEO 최고위자 과정에 재학 중인 기업체 대표 B가 학교의 학술연구 진흥을 위해 써달라며 학교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낸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3) C는 매년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 이사장 丙에게 직접 학교발전을 위해 써달라고 500만원을 기부하였고, 실제로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 (1) ◆ A할머니가 기부를 하게 된 경위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상황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A할머니가 제공한 발전기금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제8조제3항제8호), A와 甲사립대학교의 발전기금 업무담당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 B가 기부를 하게 된 경위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상황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B가 제공한 발전기금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제8조제3항제8호), B와 乙사립대학교의 발전기금 업무담당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 ◆ C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중학교 이사장 丙에게 500만원을 주는 경우,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제8조제1항), C가 제공한 학교발전기금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8호). 따라서, C와 중학교 이사장 丙은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학교에 대한 발전기금을 받는 주체는 학교·학교법인, 학교장, 교직원, 학교 법인의 임직원 등이 될 수 있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는 주체에 관하여 ‘공직자등’ 이라고 하여 **법인이 아닌 자연인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자연인으로서의 행위자가 특정될 경우 (발전기금 업무담당 임직원 등) 그 행위자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 할 것임

※ 비록 기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소속 대학교의 이익을 위해 기금을 받았더라도,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법 제정취지를 고려할 때, 실제 행위자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있음

○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제8조제3항제8호)

-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특수한 사적 친분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수수 방법, 청탁과 결부 여부, 직무관련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초·중등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자.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사례 92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아닌 가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1)

Q

공무원 甲의 대학생 아들 乙이 해당부처 산하기관 직원 A로부터 12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면 甲, 乙,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 인가요?

A

- ◆ 공무원 甲의 아들 乙은 청탁금지법상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 주체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다만, A가 “아버지(공무원 甲)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乙에게 상품권을 주었고, 乙은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며, 甲이 금품등 제공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甲이 직접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됨(제8조제4항)
- 또한,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됨(제8조제5항)
 - 청탁금지법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 주체를 ‘공직자등’ 과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로 한정하고 있음
- 다만, ‘공직자등’ 이나 ‘공직자등의 배우자’ 가 아닌 제3자가 금품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제3자는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고 공직자등이 금품등이 제공된 사실을 알았다면, 공직자등이 직접 금품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사례 93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아닌 가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2)

Q

언론사 보도국장 甲의 대학생 딸 乙이 아버지의 직속 부하 직원 A로부터 12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로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인가요?

A

- ◆ 보도국장 甲의 대학생 딸 乙은 청탁금지법상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 주체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甲, 乙, A는 청탁 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 다만, 甲과 A 사이에 의사연락이 있었고, 乙은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할 경우에는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언론사 보도 국장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라목)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됨(제8조제4항)
- 또한,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됨(제8조제5항)
 - 청탁금지법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 주체를 ‘공직자등’ 과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로 한정하고 있음
- 다만, “공직자등” 이나 “공직자등의 배우자” 가 아닌 제3자가 금품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제3자는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고 공직자등이 금품등이 제공된 사실을 알았다면, 공직자등이 직접 금품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사례 94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1)

Q

사립학교 재단이사 甲의 부인 乙이 해당학교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 A로부터 150만원짜리 가방을 선물로 받은 경우 甲, 乙,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금품등 수수 금지 의무만을 부과할 뿐(제8조제4항)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의 배우자(乙)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 ◆ 공직자등인 甲은 자신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제9조제1항제2호).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제22조제1항제2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A는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150만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하였으므로, 甲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았는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 사립학교 재단이사 甲의 부인 乙은 ‘공직자등의 배우자’로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제8조제4항)
- 사립학교 입학업무 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립학교 재단이사 甲과, 자녀가 해당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학부모 A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

사례 95 공직자들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2)

Q

대학원생 A는 자신의 지도교수 甲의 배우자 乙의 생일날에 乙에게 전달 하라며 7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甲에게 준 경우 甲, 乙,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 선물의 명목이 甲의 배우자 乙에 대한 선물이라 하더라도, 甲이 직접 선물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甲이 배우자 乙에게 선물을 전달했는지 여부는 사후적 정황에 불과합니다.
- ◆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제자인 대학원생 A로부터 7만원 상당의 선물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받았으므로 선물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A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에게 7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였으므로, 선물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 乙은 선물을 직접 받지도 않았고, 설사 乙이 A로부터 선물을 직접 받았다 하더라도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들의 배우자는 청탁 금지법상 제재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교수 甲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다목)
- 대학원생 A에 대한 지도, 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지도교수 甲과 대학원생 A간에는 직무관련성 인정됨

Q

○○시 시장 甲의 초등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A는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체육관 건립공사 입찰에 참여한 상태인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장 甲의 배우자 乙이 주최하는 ‘사회복지시설 후원인의 밤’ 행사에 참여하여 400만원의 후원금을 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甲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1) 시장 甲의 배우자 乙이 건설업자 A로부터 후원금 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장 甲이 몰랐을 경우
- (2) 시장 甲의 배우자 乙이 건설업자 A로부터 후원금 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장 甲이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3) 시장 甲의 배우자 乙이 건설업자 A로부터 후원금 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장 甲이 알고 신고한 경우

A

- (1) 甲은 자신의 배우자 乙이 甲의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A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없으며(제9조제1항제2호),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 (2) 甲은 자신의 배우자 乙이 甲의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A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았고, 乙이 A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400만원을 받았으므로, 甲은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제9조제1항제2호, 제22조제1항제2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3) 甲은 자신의 배우자 乙이 甲의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A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신고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9조제1항제2호,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

- 공직자들의 배우자 乙은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가 금지될 뿐(제8조제4항), 금품등을 제공받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은 아님
- A는 甲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400만원을 공직자들의 배우자인 乙에게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2.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가. 청탁금지법과 다른 법령의 관계

사례 97 청탁금지법과 다른 법령의 관계

Q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등 가액한도 기준과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다른 법령상 기준이 다를 경우 어떤 것을 따라야 하나요?

A

청탁금지법이 기존의 다른 법령(예를 들어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자는 청탁금지법은 물론 자신을 수범자로 하는 다른 법령의 규율내용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사례 98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제2호)(1)

Q

지인인 공무원 甲에게 오랫동안 일과 관계없이 추석 선물을 계속 보내 왔는데 앞으로는 못 보내나요? 공무원 甲의 승진 선물로 난을 보내거나 결혼식 화환을 보내는 것은 괜찮은가요?

A

- ◆ 공무원 甲과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에는 1회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직무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8조제3항 제2호).
- ◆ 승진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교·의례 등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일 경우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혼식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므로, 사교·의례 등 목적의 10만원 이하 화환일 경우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 99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제2호)(2)

Q

결혼을 앞둔 중앙부처 공무원 甲이 직무관련성 있는 담당 공기업 직원 A로부터 5만원의 축의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 등으로서 10만원 이하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8조제3항제2호).

사례 100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제2호)(3)

Q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시 피감기관 국장 A가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B에게 점심을 사거나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 3만원 이하이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것인가요?

A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는 점, 국장 A는 해당 국회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 피감기관 소속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설사 A가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3항제2호의 수수 금지 금품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국회의원 보좌관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가목)
- 소관 기관에 대한 감사 등 업무를 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 甲과 피감기관 국장 A간에는 직무관련성 인정될 수 있음

사례 101 사고·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제2호)(4)

Q

○○지방자치단체의 A팀장은 자신의 직속 상관인 甲국장과 저녁자리를 함께하고 자신의 인사를 잘 봐달라며 식사비용 합계 5만원을 지불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 ◆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A로부터 2만5천원(5만원/2)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았고, 이는 음식물 3만원 가액 범위 내이지만, 자신의 인사를 잘 봐달라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3만원 가액 범위 내의 음식물 접대라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2호의 수수 금지 금품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 A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을 벗어난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甲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 (제2조제2호가목)
- 소관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하급자에 대한 성과평가, 하급자의 인사 관련 의사결정 등을 하는 상급자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하급자 간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Q

공무원은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면 여러 번 받아도 되나요?

A

-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 5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는 것이며(제8조제3항제2호),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수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 가액기준 내의 선물을 수회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선물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나, 수회에 걸쳐 선물을 받음으로써 목적상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Q

甲중앙부처와 乙중앙부처가 업무협의 회의 후 만찬을 하고 참석 인원수 대로 각각 더치페이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청탁 금지법상 음식물 3만원 제한이 적용되나요?

A

甲중앙부처와 乙중앙부처는 업무추진비를 각각의 소속 직원들의 식사비로 집행하였을 뿐, 업무추진비를 상대방의 식사비 접대를 위해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는 공직자등과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했을 때 문제되는 것임

Q

A기업 대표 B는 공단 입주 등 업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와 MOU 체결식 진행시 ○○지방자치단체장 甲과 기념품 교환을 할 예정인데,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기념품 교환이 금지되나요? 허용된다면 기념품의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A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교환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제공된 기념품 가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 아님(제8조 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기념품 가액이 5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일 경우
 - 甲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A기업 대표 B로부터 5만원을 넘는 기념품을 받는다면 甲과 A 모두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에 해당됨(과태료 부과대상)(제8조제2항)
- 기념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 甲이 A기업 대표 B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는다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을 불문하고 甲과 A 모두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에 해당됨(형사처벌 대상)(제8조제1항)

Q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는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받은 경우 가액을 합산하고 허용가액을 5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무원이 45,000원 상당의 식사대접을 받으면서 5,000원 상당의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 합계 5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것인가요?

A

- ◆ 45,000원 상당의 식사대접과 동시에 5,000원 상당의 선물을 받는 경우, 음식물 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여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한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만원 이하일 때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때 음식물 가액은 3만원 이하, 선물 가액은 5만원 이하 기준을 각 충족하면서 동시에 합산한 금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Q

대기업 홍보팀의 A부장은 업무상 알고 지내는 甲기자의 부친상에 조의금으로 10만원을 낸 후, 해당 홍보팀은 A부장의 이름으로 5만원짜리 조화도 별도로 보낸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 ◆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기업 홍보팀 부장 A로부터 총 15만원 상당의 부조금 및 조화를 받아 시행령에서 정하는 10만원 가액 한도를 초과 하였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A는 15만원 상당의 부조금 및 조화를 제공하였으므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 A가 소속된 대기업은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24조).

- 기자 甲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라목)
- 대기업 업무 전반에 대해 취재, 보도를 하는 출입기와, 언론대응 등 업무를 담당하는 대기업 홍보담당 임원 간에는 **직무관련성 인정**될 수 있음
-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1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나, **부조금과 조화 등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10만원 이하여야 함**(시행령 [별표 1])

사례 107 사고·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제2호)(10)

Q

기업 홍보직원 A가 친한 기자 甲의 아들 돌 잔치선물로 1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보낸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돌잔치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이 아닌 선물 5만원 기준이 적용되므로, 10만원 상당의 금반지는 선물 5만원 가액한도를 초과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8조제3항제2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경조사는 결혼, 장례의 경우에 한정되며, 경조사비는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로서, 10만원 이하일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Q

A민간회사에서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직원 경조사시 일률적으로 화환을 제공하거나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예외 기준(경조사비 10만원)을 상회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직원들의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직원들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직원에게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나요?

A

- ◆ 비록 배우자가 공직자등인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 직원의 배우자와 A 민간회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해당 직원이 A민간회사 내부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지급받아도 청탁 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한편, A민간회사와 직원의 배우자(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하면 원칙적으로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나, 해당 공무원을 특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제8조제3항제8호).

사례 109 사고·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제2호)(12)

Q

고등학교 교사 甲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 A로부터 2만원짜리 카카오톡 음료쿠폰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인가요?

A

교사 甲이 담임을 맡고 있어 해당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 A의 음료쿠폰 선물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 수행·사고·의례 등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A가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 **고등학교 교사**는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제2조제2호다목)
-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와, 해당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 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상 이익 또는 금전 등(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이나 교통·통신 등의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국립학교 교원이 졸업식, 스승의 날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7.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침 등으로 정한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사례 110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제2호)(13)

Q

중학교 교사 甲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 B의 부모 A가 찾아와 상담을 하다가 식사시간이 되어 학생 B의 부모 A가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산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교사 甲이 담임을 맡고 있어 해당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 A의 식사 접대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등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A가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 중학교 교사는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제2조제2호다목)
-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와, 해당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

다.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사례 111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제3호)

Q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지도·감독 및 보조금 지원 업무 등을 하는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甲은, 자신의 배우자 乙이 甲의 직무와 관련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는 영화 제작자 A로부터 경매가 1억원 상당의 유명 화가의 그림을 1천만원에 구입한 사실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甲, 乙,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 乙은 배우자인 甲(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A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甲은 자신의 배우자 乙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1항, 제8조제4항, 제22조제1항제2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A는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1항, 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 甲은 배우자인 乙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가 있음(제9조제1항제2호)
 -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지도·감독 및 보조금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甲의 직무는 영화 제작자 A와 직무관련성이 있음
- 乙이 시가 1억원 상당의 유명 화가의 그림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1천만원에 구입한 경우, 이는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행위**로, 외형상의 행위(가장행위)인 매매는 무효이고 숨겨진 행위(은닉행위)인 증여만 유효
 - 매매는 무효이므로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렵고, 유효한 행위인 증여는 청탁금지법상 정당한 권원에서 제외되므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

라.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사례 112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제4호)

Q

- (1) 공무원 甲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사촌 A가 조의금으로 50만원을 낸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2) 사무관으로 승진한 공무원 乙이 재력가인 11촌 아저씨 B로부터 승진 축하 기념으로 120만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경우(甲과 A는 직무 관련성 없음)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 (1)
 - ◆ 사촌 A는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A가 조의금으로 낸 50만원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8조제3항제4호).
 - ◆ 따라서 甲과 A 모두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 ◆ 11촌 아저씨 B는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120만원 상당의 양복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합니다(제8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乙과 B 모두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 ◆ 乙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이상,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B는 공직자등인 乙에게 120만원 상당의 양복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

- 혈족은 자연혈족(직계혈족, 방계혈족) 외에 법정혈족(입양)도 포함하며,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아님

※ 인척의 범위(「민법」 769조) : ①혈족의 배우자(예: 남동생의 아내(제수씨)), ②배우자의 혈족(예: 아내의 아버지(장인어른)), ③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예: 아내의 언니(처형)의 남편(동서))

마. 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사례 113 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제5호)(1)

Q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甲의 결혼식에 초등학교 동창회장 A가 참석하여 동창회 회칙에 따라 150만원의 경조사비를 낸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인가요?

A

동창회장 A가 제공한 경조사비는 동창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8조 제3항제5호). 따라서 공무원 甲과 동창회장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직자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 다만,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서 제외

사례 114 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제5호)(2)

Q

경찰 공제회가 재직 중인 공상 경찰 공무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경찰 공무원과 관련된 공제회의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하여 기준(예컨대, 경찰공제회법 및 이에 따른 경찰공제회 정관 등)에 따라 구성원인 경찰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제8조제3항제5호).

- 공직자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 다만, 공직자등과 관련된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제8조제3항제5호)

「경찰공제회 정관」 제27조(목적사업)

5. 부담금, 정부보조금, 상속, 증여, 기부, 출연 등 공제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금조성사업

제40조(급여의 종류) ② 회원에 대한 보조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상요양부조금

바.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사례 115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제6호)(1)

Q

A회사가 신제품 론칭 행사를 호텔에서 개최하면서 관련 중앙부처 담당 공무원 30여명을 초대하여 1인당 10만원 상당의 호텔 식사를 제공하고 7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 ◆ 행사 참석 대상이 관련 중앙부처 담당 공무원 30여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 행사를 호텔에서 개최하면서 호텔 식사를 제공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인당 10만원 상당의 호텔 식사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음).
- ◆ 선물의 경우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음), 7만원 상당의 선물은 가액범위를 초과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 ‘공식적인 행사’ 인지 여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
 - 행사 목적 및 내용 : 주최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내용이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초청기관의 공문·공식초청장 등이 있는지 여부,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
 - 참석 대상 : 참석자가 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
 - ※ 행사 목적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특정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하며, 특정 집단 내에서도 일부 대상만이 참석하는 등 참석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 가능성이 낮음
 - 공개성 : 행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는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행사의 결과에 대한 사후 공개가 있는 경우, 비공개로 주최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성이 있다고 판단

- 행사비용 : 행사비용이 정상적인 예산집행 절차를 거쳐 집행되었는지 여부

- 기타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 기타 제반사항 검토

○ 통상적인 범위 :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

-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특정 금품등의 제공이나 특정 장소에서의 행사 개최가 불가피한지 여부 등을 고려

○ 일률적 제공 : 특정 개인이나 특정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다만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 차등은 가능

Q

○○이동통신사가 신규 이동통신 기술개발을 기념하여 개최한 행사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 A가 참석하여 60만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받았는데, 그 태블릿 PC가 참석한 공무원들에게만 지급된 경우 청탁 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 ◆ 선물의 경우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제8조제3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 선물인 경우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 그런데 60만원 상당의 태블릿 PC는 가액범위를 초과하며, 공무원들에게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 ◆ 한편, 공무원 A가 받은 태블릿 PC는, 제작 목적(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지 않았음), 가액(60만원 상당의 고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음).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제8조제3항제6호)
 -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여,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특정 개인이나 특정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률적 제공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 차등은 가능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은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제8조 제3항제7호)
 - 기념품·홍보용품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

Q

○○중앙부처 장관 A가 홍보 목적으로 일부 특정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하는 정책간담회를 한 후, 인근 식당에서 기자 甲을 포함한 참석자들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한정식을 샀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부 특정 언론사 기자들을 참석 대상으로 하는 등 참석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점, 단순 홍보를 위한 경우로서 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정책설명회를 하면서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인당 5만원 상당의 한정식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음).

- 기자 甲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라목)
- 정책설명회 관련 취재·보도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자와 정책설명회를 주관한 정부부처 장관 간 **직무관련성 인정**됨(제8조제2항)
- ‘**공식적인 행사**’ 인지 여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
 - **행사 목적 및 내용** : 주최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내용이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초청기관의 공문·공식초청장 등이 있는지 여부,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
 - **참석 대상** : 참석자가 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
- ※ 행사 목적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특정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하며, 특정 집단 내에서도 일부 대상만이 참석하는 등 참석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 가능성이 낮음

- **공개성** : 행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는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행사의 결과에 대한 사후 공개가 있는 경우, 비공개로 주최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성이 있다고 판단
 - **행사비용** : 행사가 정상적인 예산집행 절차를 거쳐 집행되었는지 여부
 - 기타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 기타 제반사항 검토
- **통상적인 범위** :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
-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특정 금품등의 제공이나 특정 장소에서의 행사 개최가 불가피한지 여부 등을 고려
- **일률적 제공** : 특정 개인이나 특정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다만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 차등은 가능

사례 118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제6호)(4)

Q

사립학교인 ○○고등학교 진학지도교사인 甲은 지방에 있는 2년제 □□ 대학의 입시설명회에 참석하고 대학의 입학처 직원인 A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 ◆ 선물의 경우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 선물인 경우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 그런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가액범위를 초과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 사립학교 진학지도교사 乙은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다목)
-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제21조)
- A는 공직자등인 甲에게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였으므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징계대상에도 해당(제21조)

사.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

사례 119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제7호)

Q

공무원이 주말에 가족과 함께 대형마트를 방문하였는데, A전자회사에서 주최하는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300만원짜리 TV를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공무원은 대기업의 신제품 출시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불특정 다수인이 응모할 수 있는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당첨된 것이므로, 경품 추첨으로 수령한 300만원 상당의 텔레비전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8조제3항제7호).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의 경우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제8조 제3항제7호)
 -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
 - 경연·추첨의 경우 응모, 신청 등에 의해 대상자가 특정되지만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으면 무방

아.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사례 120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제8호)(1)

Q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회상규라는 기준이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지 않나요?

A

-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상규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그 개념과 판단 기준은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있으므로, 적용과정에서 불명확성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특수한 사적 친분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수수 방법, 청탁과 결부 여부, 직무관련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대법원은 일관되게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 아래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등 참조)
- 헌법재판소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부정청탁금지조항에 규정된 ‘부정청탁’, ‘법령’, ‘사회상규’라는 용어가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어느 정도 가치 판단이 필요한 일반개념이지만, 부정청탁금지조항의 입법배경 및 입법취지와 관련 조항 등을 고려한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충분히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시(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결정)

참고판례

‘사회상규’의 판단기준 관련

▶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①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④긴급성, ⑤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사례 121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제8호)(2)

Q

- (1) 특수대학원(6개월 과정) 입학 시 공직자등이 장학금(예를 들어 300만원 상당의 등록금)을 지급받는 것은 가능한가요?
- (2) 기업이 출연해서 만든 사회복지법인을 통해서 재직 중인 공상 공무원에게 100만원을 후원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 (1) 특수대학원이 특정 공직자등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인과 공직자등을 차별함이 없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장학금 자격요건을 갖춘 공직자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8호).
- (2) 사회복지법인이 특정 공직자등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인과 공직자등을 차별함이 없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직자등에게 후원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8호).

- 공직자등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이상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제8조제3항제8호)

사례 122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제8호)(3)

Q

A제약회사가 고혈압 치료제인 신약을 개발하여 판매하면서 제품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국립대학병원 의사 甲이 제품 설명회에 참석하여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의료법」상 제품설명회에서 10만원 이하 식음료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甲이 제공받은 10만원 상당의 음식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3항제8호)

○ 국립대학병원 의사 甲은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나목)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법 제23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이익등”이란 별표 2의3과 같다.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16조의2 관련)

허용 행위	허용 범위
4. 제품설명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실제 비용의 교통비,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숙박,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1회당 1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 사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 제품설명회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만을 말하며, 보건의료인의 모임 등에 필요한 식음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Q

A회사(제약회사가 아님을 전제)가 자사제품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국립대학 공과대학 교수 甲(A회사와 직무관련 인정됨을 전제)이 참석하여 A회사가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지침에 따라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경우, 甲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에서 사업자의 금품류 제공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학술대회참가지원, 자사제품 설명회에서 10만원 이내의 식음료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

A

- ◆ 제8조제3항제8호의 ‘기준’이라 함은, 금품등을 받는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을 의미하는 것이지, 제공자 측이 제공을 허용하는 내부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 ◆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은 제공자 측이 제공을 허용하는 기준이므로, 제약회사가 의사 甲에게 제공한 10만원 상당의 식음료는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국립대학 공과대학 교수 甲은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나목)
- 공정거래법에 근거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은 제공기관의 기준이므로,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지 않음(제8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지 않음)
 - 앞서 본 「의료법 시행규칙」이 직접적인 대내외적 효력이 있는 법령에 해당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가 된 것과는 차이가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거래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⑥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5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음식물 가액이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등에 해당하지 않음(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10만원 상당의 음식 접대를 받았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 다만,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요건 검토 필요**(제8조제3항제6호)

사례 124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제8호)(5)

Q

결혼식 혼주가 하객으로 참석한 직무관련 공무원 甲을 포함하여 모든 하객들에게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모든 하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를 동일하게 제공했다는 점, 관혼상제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를 접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인 점,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신뢰를 해하지 않을 정도의 식사 제공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제8조제3항제8호).

-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특수한 사적 친분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수수 방법, 청탁과 결부 여부, 직무관련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참고판례

‘사회상규’의 판단기준 관련

- ▶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①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④긴급성, ⑤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사례 125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제8호)(6)

Q

○○대기업 직원 A는 대기업의 조사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 사무관 甲과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인데, 대기업 직원 A가 여자 친구인 사무관 甲의 생일에 15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로 준 경우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친밀도가 매우 높은 이성간 교제관계에서 애정의 표시로 제공되는 금품등의 경우 일반적인 사적 관계에 비해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 직원 A와 사무관 甲은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인 점에 비추어, 다소 고액의 명품 가방이라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8호).

-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특수한 사적 친분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수수 방법, 청탁과 결부 여부, 직무관련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사례 126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제8호)(7)

Q

제약회사 직원 A가 대학 친구인 보건복지부 공무원 甲을 만나 1년간 1회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20회 함께 했는데, 모두 제약회사 직원 A가 밥값을 냈다면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 공무원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1년 동안 총 200만원(400만원/2인) 상당의 접대를 받았으므로,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A는 공무원 甲에게 1년 동안 200만원 상당의 접대를 하였으므로, 금품 등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 제약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직원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24조).

- 甲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 (제2조제2호가목)
- 보건·의료 등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甲과 제약회사 직원 A간 **직무관련성 인정** 가능(제8조제2항)
- 두 사람이 비록 대학친구이기는 하지만, 각 당사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내용에 관련성**이 있다는 점, 접대 1회당 1인이 수수한 비용이 10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두 사람만 **비공개적으로** 만나 음식 접대가 이루어진 점, 1년 동안 20회에 걸친 식사를 하면서도 **식사비용은 전적으로 제약회사 직원이 부담**한 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식물 허용가액 3만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제8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지 않음),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례 127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제8호)(8)

Q

- (1) 지상파 방송사 기자인 甲은 언론진흥기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준정부 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1년간 영국으로 연수를 다녀왔는데 각 체재비, 학비, 항공료 명목으로 약 5,000만원 가량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 경우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2) 중앙일간지 기자인 乙은 모 기업이 기금을 출연하여 운영하는 A언론 재단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으로 1년간 미국으로 연수를 다녀왔는데, 체재비, 학비, 항공료 등 연수 비용으로 약 5,000만원 가량을 후원받았습니다. 이 경우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설치된 언론진흥기금의 법률상 용도에 따라 기자 甲이 지원받은 해외연수 비용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제8조제3항제8호),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 기업이 기금을 출연하여 운영하는 언론재단으로부터 기자 乙이 지원 받은 해외 연수비용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1 관련]

- 지상파 방송사 기자 甲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라목)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금관리형 준정부 기관에 해당하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2. 준정부기관

-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치 등) 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및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둔다.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언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언론매체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언론산업 진흥 등을 위한 교육·연수 등의 직무를 수행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언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2. 신문의 발행·유통 등의 발전을 위한 사업
3. 한국 언론매체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4.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5. 언론산업 진흥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4조(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이하 "잡지"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4. 언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①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된다.

1.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
2.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관련 인력양성, 조사·연구, 정보화 사업 지원
3.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4. 독자 권익 및 언론공익사업 지원
5.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운영
6.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잡지사업자에 대한 응징
7. 해외 한국어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사업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나,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로서 제재대상 아님(제8조제3항제8호)

[질문2 관련]

- 중앙일간지 기자 乙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라목)
- 해외연수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수비용 5,000만원을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이라고 보기도 어려움(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해외연수 비용을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라고 보기도 어려움(제8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지 않음)
 - 사기업의 기자에 대한 연수비용 지원에 대한 별도의 근거법령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언론재단이 연수비용 지원에 관한 내부기준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 제8조제3항제8호의 ‘기준’은 금품등을 받는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사규 등 내부기준을 의미하는 것이지, 제공자 측이 제공을 허용하는 내부기준이 아님
 - 언론인 해외연수·어학교육·저술출판지원 등은 특정 직종에 국한된 지원인 점, 지원 금액이 통상적으로 1년에 1인당 5,000만원을 넘어서는 점, 연수비용의 재원은 특정 기업 또는 기업 대표자가 출연한 금전인 점,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여부에 민간기업이 설립한 언론재단 이사진이 관여하는 점, 해당 기업의 기사 처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는 금품등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특수한 사적 친분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수수 방법, 청탁과 결부 여부, 직무관련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사례 128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제8호)(9)

Q

○○기업 대표 A가 출입기자단을 위하여 ○○기업의 비용으로 기자실을 만들어 취재공간을 확보하고 사무용품(TV, 복사기 등 지원) 지원 등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특정 언론사들이 상주(또는 특정 언론사들에게 고정석을 부여)한다거나, 식사나 선물 등 지나친 편의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브리핑룸 정도의 공간 확보와 이에 수반한 집기 등 간단한 편의제공은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라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상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제8조 제3항제8호).

3. 금품등 수수행위에 대한 제재

가. 공무원 등 관련 사례

사례 129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사례(1)

Q

건설 관련 중앙부처 과장인 甲은 고향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친구 A로부터 “직원들 격려를 위해 맛있는 것을 사 주라”는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았고, 甲은 실제 이 돈을 직원들 격려금으로 전액 사용한 경우(甲과 A는 아무런 직무 관련이 없음),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 공직자등인 甲은 의사 A로부터 1회 150만원을 수수하였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甲이 수수한 금품등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청탁금지법 위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A는 공직자등인 甲에게 1회 150만원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 공직자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이상,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 甲과 A가 단순한 지연·학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더라도 甲이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8조제3항제5호의 수수 금지 금품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A가 제공한 금액이 150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행위를 제재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청탁금지법상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제8조제3항제8호의 수수 금지 금품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130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사례(2)

Q

○○지방자치단체 총무과장 甲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대회를 개최 하면서 직원들에게 줄 경품이 필요하자 ○○지방자치단체와 금고계약을 맺고 있거나 각종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는 관내 A금융기관 소속 직원 B에게 협찬을 요구하여 휴대폰, 카메라, 전자레인지, 상품권 등 모두 5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받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甲, A, B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 甲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및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제21조).
- ◆ B는 공직자등에게 5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 ◆ A금융기관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직원 B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 될 수 있습니다(제24조).

○ 지방자치단체 총무과장 甲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가목)

○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총무과장 甲은 지방자치단체 체육대회를 위해 관내 금융기관 소속 직원에게 협찬을 요구하고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에 따른 제재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제8조제1항)

※ 비록 협찬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총무과장 甲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소속 지방자치단체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금품등을 요구·수수했더라도,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법 제정취지를 고려할 때, 실제 행위자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있음

※ 협찬 받은 경품을 직원들에게 경품으로 나누어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수수한 금품등의 사용방법과 관련된 사후적 정황으로서 처벌 수위 결정 시 참작 사유에 불과

사례 131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사례(3)

Q

- (1) 개인사업을 하는 A(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전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공무원 甲에게 결혼 선물로 11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사준 경우, 청탁금지법상 어떤 제재를 받나요?
- (2) ○○지방자치단체 지적과에서 10년간 근무해 온 공무원 乙은 기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중앙부처로 전출을 가게 되었는데, 평소 지적 관련 업무로 잘 알고 지내던 감정평가사 B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사다면서 시가 15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선물로 준 경우, 청탁금지법상 어떤 제재를 받나요?

A

- (1) ◆ 공무원 甲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및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제21조).
 - ◆ A는 공무원 甲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 (2) ◆ 공무원 乙은 B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및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제21조).
 - ◆ B는 공무원 乙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 다만, 甲과 A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로서 원래 친분관계가 있는 점, 직무관련성이 없는 점, 결혼 축하 목적으로 냉장고를 사준 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만한 상황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여지도 있음**(제8조제3항제8호)
- 한편, 공무원 乙과 감정평가사 B의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할 때, **150만원 상당의 시계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제8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132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사례(1)

Q

○○기초자치단체 골프장 인·허가 담당 공무원 甲은 관내 골프장에 근무 중인 직원 A로부터 명절선물로 5만원 상당의 와인 4병을 받고, 같은 부서 직원 3명에게 1병씩 나누어주고 본인도 한 병을 가진 경우,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 공무원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20만원=5만원×4병) 금품등을 수수했으므로(수수 후 부서 직원 3명에게 1병씩 나누어 준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위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20만원 상당의 와인 선물세트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 5만원 이하의 금품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8조제3항제2호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A는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20만원)을 공무원 甲에게 제공했으므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 A가 소속한 골프장은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직원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24조).

-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甲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가목)
-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의 경우,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제8조제2항)
 - 골프장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甲과 관내 골프장 근무 직원 A간에 직무 관련성 인정될 수 있음

나.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관련 사례

사례 133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사례(1)

Q

○○신문사 과장 甲은, 신문사 내부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직원들에게 나눠 줄 경품이 필요하자, 신문사와 광고계약을 맺고 있는 A기업체 대표 B에게 협찬을 요구하였고, A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TV, 카메라, 전자 레인지를 협찬 받아 모두 직원들에게 경품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甲, A, B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이 2,00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요구·수수하였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B는 공직자등에게 2,00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 ◆ A기업체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24조).

○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과장 甲은 신문사와 광고계약을 맺고 있는 A기업체 대표 B에게 금품등 제공을 요구·수수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제8조제1항)

※ 비록 협찬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장 甲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소속 신문사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금품등을 요구·수수했다더라도,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법 제정취지를 고려할 때, 실제 행위자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있음

※ 협찬 받은 경품을 직원들에게 경품으로 나누어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수수한 금품등의 사용방법과 관련된 사후적 정황으로서 처벌 수위 결정 시 참작 사유에 불과

○ 참고로,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는 양벌규정의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A기업체는 대표 B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책되기 어려움(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4817 판결 등 참조).

Q

모 신문사 소속 간부 甲은 취재를 맡고 있는 출입기관(○○대기업) 직원 A로부터 자신들의 승진 축하 명목으로 15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는데, 즉시 반환하거나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함에도 내부직원에게 경매처분 후 그 수입금을 불우이웃들에게 전달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 ◆ 선물을 받은 후 해당 선물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청탁 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따라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15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A는 공직자등에게 15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 ◆ A가 소속된 ○○대기업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24조).

- 신문사 간부 甲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라목)
- 150만원 상당의 승진 축하 선물은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기도 어려움
 - 금품등 제공 목적이 직무관련자에 대한 승진 축하 명목인 점, 금품등 제공자가 출입기관 임직원등인 점, 언론사 간부와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없는 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

Q

방송사 PD 甲은 선진 환경 우수사례 실태에 대한 보도를 계획하던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국가의 선진 해외 연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화를 걸어 선진 우수사례 보도를 위한 취재가 필요하니 함께 데려가 줄 것을 요청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 시찰을 다녀온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나요?

A

- ◆ 공직자등인 甲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이상,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공직자등에게 1,000만원 상당의 해외시찰 비용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방송사 PD 甲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라목)
- 1,000만원 상당의 비용은 공직자등의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136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사례(4)

Q

기자 甲은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가전전시회(CES) 출장을 갔는데, 항공비(300만원)는 소속 언론사에서 부담하고 현지 체재비(700만원)는 국내 A가전회사에서 부담한 경우,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 ◆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70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제8조 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A가전회사 업무담당자는 공직자등에게 체재비 700만원 상당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 ◆ A가전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업무담당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24조).

- 기자는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라목)
- 700만원 상당의 비용은 공직자등의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제8조제3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137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사례(5)

Q

유력 신문사의 편집국장으로 승진한 언론사 간부 甲이 고등학교 동창이자 오래된 친구인 사업가 A로부터 승진 축하 기념으로 120만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경우(甲과 A는 직무관련성 없음)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12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A는 공직자등에게 120만원 상당의 양복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 언론사 간부는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라목)
- 120만원 상당의 양복은 선물 5만원 가액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음(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138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사례(6)

Q

미국 주재 ○○일보 소속 특파원 甲이 주재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A의 직원 B로부터 동 기업이 운영하는 필리핀 소재 골프장 1년 무료회원권(멤버십카드)(500만원 상당)을 제공 받은 경우(당시 프로모션 차원의 제공이라는 설명을 들었음), 甲, A, B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50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B는 공직자등에게 500만원 상당의 골프장 1년 회원권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 ◆ 한국기업 A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B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 될 수 있습니다(제24조).

- 특파원 甲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라목)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이 되려면 그 제공대상이 특정인, 특정집단으로 한정되지 않아야 하며, 사회상규에 비추어 보아 홍보용 물품으로 볼 수 있는 가격대이어야 할 것이므로, 500만원 상당의 골프장 1년 무료 회원권(멤버십카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 등이라고 보기도 어려움(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음)

설사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대한민국 국적 특파원 A와 한국기업 직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됨(속인주의)

-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사례 139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사례(1)

Q

○○언론사 甲기자는 A병원을 취재하면서 해당 병원 의사 B로부터 개인 치료를 받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하여 주요 고객 할인 명목으로 20만원을 부담하지 않는 혜택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 인가요?

A

- ◆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재 중인 병원에서 진료비 20만원 할인 혜택을 받았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 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B는 공직자등에게 20만원 상당의 진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였으므로, 해당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 A병원 또는 A병원 개설자인 개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B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24조).

- 언론사 기자 甲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라목)
- 甲은 A병원을 취재하는 중이었으므로 직무관련성 인정될 수 있음

사례 140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사례(2)

Q

언론사 소속 甲기자는 2명의 동료들과 퇴근 후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우연히 출입처 홍보실 팀장 A를 만나 합석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A팀장은 일행과 합석하여 40만원 상당의 식사와 음주를 한 후 그 비용 일체를 지불한 경우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 ◆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출입처 홍보실 팀장 A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 접대를 받았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A는 공직자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 접대를 하였으므로, 해당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 A가 소속된 출입처는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24조).

- 언론사 소속 기자 甲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라목)
- 출입처 업무 전반에 대해 취재, 보도를 하는 언론사 소속 甲기자와, 출입처 관련 언론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홍보실 팀장 A 간에는 직무관련성 인정될 수 있음
-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하여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 분할한 금액이 수수한 금품등에 해당 : 40만원 × 1/4 = 10만원

Q

○○지방자치단체 대변인실에서 근무하는 A과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甲기자는 업무적으로 만날 일이 잦아 매우 친한 사이인데, 어느 날 A과장이 甲기자로부터 당장 필요한 현금이 없어 5만원을 꿔고, 다음날 돈을 갚으려하자 甲기자는 “그냥 술이나 한잔 사라”고 하여 A과장이 산 술값이 12만원인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 ◆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대변인실 과장 A로부터 3만5천원(7만원/2명) 상당의 주류 접대를 받았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 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A는 공직자등에게 3만5천원 상당의 주류 접대를 하였으므로, 해당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 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기자 甲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라목)
- 지방자치단체 관련 취재 및 보도 업무를 담당하는 기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 언론보도 대응 등 업무를 담당하는 대변인실 과장 간에는 직무관련성 인정될 수 있음
- 12만원 중 5만원은 사적 거래(금전 소비대차)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나(제8조제3항제3호), 이를 초과하는 부분(7만원)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
 -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하여 실제 각자에게 소요된 비용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 분할한 금액이 수수한 금품등에 해당 : 7만원 × 1/2 = 3만5천원
 -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주류 접대 목적이 빌렸던 돈을 갚는 취지였던 점, 금품등 가액이 3만5천원 상당으로서 고액은 아닌 점, 특별히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여지는 있음(제8조제3항제8호)

Q

방송국 PD 甲은 자신이 연출하는 드라마 여주인공 배우의 소속사 A의 직원 B로부터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A사가 주최하는 100만원 상당의 공연 티켓 10장을 받은 경우 甲, A, B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연 주최측으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공연티켓을 제공받았으므로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B는 공직자등에게 100만원 상당의 공연티켓을 제공하였으므로, 해당 금품등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 소속사 A는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B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24조).

- 방송국 PD는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라목)
- 드라마 연출, 주인공 캐스팅 권한을 가진 방송국 PD와, 소속배우의 드라마 출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사 A의 직원 B 간에는 직무관련성 인정될 수 있음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선물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이 되려면 그 제공대상이 특정인, 특정집단으로 한정되지 않아야 하며, 사회상규에 비추어 보아 홍보용 물품으로 볼 수 있는 가격대이어야 할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 등이라고 보기도 어려움(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음)
 - 금품등 제공자가 직무관련자인 소속사 직원인 점, 방송국 PD와 소속사 직원 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없는 점, 공연티켓 금액이 100만원 상당인 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라고 보기도 어려움(제8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143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사례(5)

Q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카메라 감독 甲은 함께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는 △△배우의 A매니지먼트 회사 소속 대표 B로부터 △△배우가 화면에 잘 나오도록 촬영해 줄 것을 부탁받으며 2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로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 ◆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드라마 촬영 등 직무와 관련하여 매니지먼트 회사 대표 B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았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B는 공직자등인 카메라 감독에게 20만원 상당의 양주 선물을 하였으므로, 해당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 A매니지먼트 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24조).

- 방송국 근무 카메라 감독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라목)
- 드라마 촬영 업무를 담당하는 카메라 감독과, 해당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는 배우의 매니지먼트 회사 임직원 간에는 직무관련성 인정될 수 있음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선물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므로, 20만원 상당의 양주는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등에 해당하지 않음(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 금품등 제공자가 직무관련자인 매니지먼트 회사 직원인 점, 카메라 감독과 매니지먼트 회사 직원 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없는 점, 양주 가액이 20만원 상당인 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라고 보기도 어려움(제8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는 양벌규정의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A회사는 대표 B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책되기 어려움(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4817 판결 등 참조).

사례 144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사례(6)

Q

○○신문사 소속 기자 甲, 乙, 丙은 출입처인 A대기업 홍보팀장 B로부터 주말에 골프접대를 받았는데, 골프비용 80만원 전액을 B가 결제한 경우 甲, 乙, 丙,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 乙, 丙은 직무와 관련하여 출입처인 대기업 홍보팀으로부터 1인당 2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았으므로, 각각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 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B는 공직자등인 기자들에게 2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하였으므로, 해당 금품등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 A대기업은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홍보팀 임직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24조).

- 신문사 기자는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라목)
- 출입처 업무 전반에 대해 취재, 보도를 하는 신문사 소속 기자와, 언론대응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대기업 홍보팀장 간에는 직무관련성 인정될 수 있음
-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하여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 분할한 금액이 수수한 금품등에 해당 : 골프비용 80만원 × 1/4 = 20만원

다.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관련 사례

사례 145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사례

Q

사립초등학교 교사인 甲이 자신의 반 학생의 학부모 A로부터 ‘숙제를 못했다는 이유로 혼내지 말고 칭찬해 달라. 생활기록부에 좋게 기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2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 ◆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12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A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 사립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이고, 그 교원 A는 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제2조제2호다목)
- 만약, 국공립학교의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촌지)을 받은 경우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인정되어 「형법」상 뇌물에 해당

사례 146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사례(1)

Q

학급회장 어머니 A가 담임 선생님 甲에게 수학여행을 가서 학급 아이들과 맛있는 것을 사 드시라고 하면서 50만원을 전달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 ◆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50만원을 받았으므로,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A는 공직자등인 교사에게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해당 금품등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교사는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다목)
- 학생 지도, 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와 학부모간 직무관련성 인정될 수 있음

Q

- (1) 유치원 교사 甲이 학부모 A로부터 '자녀를 잘 돌봐 달라'는 대가로 30만원의 상품권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2) 추석 명절에 사립학교 교사 甲이 학부모 A로부터 20만원 상당의 구두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3) ○○초등학교 1학년 1반에 재학 중인 학생의 아버지인 A는 1학년 1반 담임선생님 甲에게 좋은 일에 사용하라고 하며 다른 동료 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50만원을 주었는데, 교사 甲은 5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불우이웃 성금으로 낸 경우,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 (1)
 - ◆ 유치원 교사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30만원의 상품권을 받았으므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A는 甲에게 30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하였으므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2)
 - ◆ 교사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으므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A는 甲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였으므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3)
 - ◆ 교사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50만원을 받았으므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A는 甲에게 50만원을 제공하였으므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질문1 관련]

-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 운영되는 학교이므로 유치원 교사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며(제2조제2호다목), 유아에 대한 지도·감독, 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간 직무관련성 인정될 수 있음
-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 5만원 이하의 금품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질문2 관련]

- 사립학교 교사는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며(제2조제2호다목), 학생 지도, 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와 학부모간 직무관련성 인정될 수 있음
-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 5만원 이하의 금품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질문3 관련]

- 학생지도 등을 직무로 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甲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의 부모와 직무관련성 인정될 수 있음
- 교사 甲이 직무와 관련하여 학부모 A로부터 받은 50만원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고, 이를 수수한 이상 불우이웃 돕기 등에 사용했다라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
- 교사 甲과 학부모 A의 관계, 수수한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었다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없음(제8조제3항제2호, 제8호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148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사례(3)

Q

제약회사 직원 A가 국립대학병원 소아과 의사 甲에게 다음 달에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어떤 제재를 받나요?

A

-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므로(제8조제2항), 식사 대접 '약속'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10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약속 받았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A는 공직자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약속하였으므로, 해당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 제약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직원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24조).

- 국립대학병원 소아과 의사는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나목)
- 환자 치료 및 약물 처방 등을 담당하는 의사와 제약회사 직원 간 직무관련성 인정될 수 있음
- 10만원 상당의 식사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으로서 3만원 이하의 금품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149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사례(4)

Q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유치원 운전기사 甲에게 학부모 A가 선물로 들어온 시가 5만원이 넘는 홍삼팩 1박스를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 인가요?

A

- ◆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5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았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 ◆ A는 공직자등에게 5만원이 넘는 선물을 제공하였으므로, 해당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유치원 운전기사는 유치원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할 수 있음(제2조제2호다목)
-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통학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유치원 운전기사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간에는 직무관련성 인정 가능
 - ※ [참고] 사회상규에 비취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직무관련성 부정(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 3579)
- 금품등 가액평가 문제(제2조제3호나목)
 -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없으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 상이한 가격자료가 있는 경우 신빙성이 담보되는 객관적·합리적인 자료가 우선하되,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 기준(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 7056 판결)
 - 선물로 받은 음식물을 다시 선물하는 경우, 영수증 등 가액평가의 객관적 기준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가 기준(5만원 초과)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5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금품등 제공 목적이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운전기사를 격려하는 것인 점, 선물로 받았던 홍삼팩을 준 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크게 의심받을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제8조제3항제8호)

사례 150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사례(5)

Q

중학교 급식조리원으로 일하고 있는 甲은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납품 입찰을 하려는 친구 A와 20만원 상당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친구 A가 계산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 ◆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납품입찰을 하려는 A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 접대를 받았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A는 공직자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 접대를 하였으므로, 해당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중학교 급식조리원 甲은 학교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다목)
-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등 납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학교 급식 조리원 甲과 해당 중학교에 납품 입찰을 하려는 친구 A간 직무관련성 인정 될 수 있음
-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하여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 분할한 금액이 수수한 금품등에 해당 : 20만원 × 1/2 = 10만원
 - 10만원 상당의 주류 및 식사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 되는 음식물 등으로서 3만원 이하의 금품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151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사례(6)

Q

공립중학교와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 대표 A는 추석을 맞이하여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각각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었으나 무기계약근로자 甲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거절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 인가요?

A

- ◆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중학교와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 대표 A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A는 공직자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였으므로, 해당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 업체는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직원 A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 될 수 있습니다(제24조).
- ◆ 한편, 선물을 거절한 나머지 직원들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 적용대상 문제(제2조제2호다목)

- 직원은 **근로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행정직원인 무기계약 근로자 甲도 **공직자등에 포함될 수 있음**

○ 선물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므로, 10만원 상당의 선물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제8조제3항제2호)

- 공립중학교 행정실 직원들도 공직자등에 포함되나(제2조제2호다목),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에 대해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됨(제9조제1항제1호, 제9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단서)

사례 152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사례(7)

Q

학부모 A는 甲교사가 정년퇴직하기 전 성대한 송별회를 하여 1인당 7만원 상당의 식비가 나온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 ◆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7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았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학부모A는 공직자등에게 7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하였으므로, 해당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교사는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며(제2조제2호다목), 학생 지도, 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와 학부모 간 직무관련성 인정될 수 있음
- 음식물 가액이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므로,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Q

교육 관련 사업 부문이 있는 기업에서 홍보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A씨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고등학교 동문 7명과 송년회를 했습니다. A씨를 포함한 7명은 공직과 전혀 관계없는 직업이고 1명만 사립학교 교직원입니다. A씨는 술을 마시다가 교직원 친구 甲에게 “앞으로 우리 회사가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한다. 조언이 필요하니 잘 봐 달라”고 하면서, 그 날 술자리는 A씨가 계산했는데 술값은 80만원인 경우 甲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 ◆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A로부터 10만원(80만원 / 8명)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았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A는 공직자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하였으므로, 해당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 A가 재직 중인 기업은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직원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24조).

- 사립학교 교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다목)
- A가 재직 중인 기업의 업무 내용(학생들을 위한 사업)에 비추어 볼 때, A와 甲 간에 직무관련성 인정될 수 있음
-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하여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 분할한 금액이 수수한 금품등에 해당 : 80만원 × 1/8 = 10만원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정기적으로 만나는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점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필요(제8조제3항제8호)

사례 154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사례(9)

Q

원어민 기간제교사인 외국인 A는 공립초등학교 교장 甲에게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는 말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 ◆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원어민교사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았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A는 공직자등에게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하였으므로, 해당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제1항)
- 학교장은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다목)하며, 원어민교사에 대한 인사권 등을 가지는 학교장과 원어민교사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됨
- 50만원 상당의 양주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 5만원 이하의 금품등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제8조제3항제2호, 제8호에 해당하지 않음)

라. 공무수행사인 관련 사례

사례 155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의 금품등 수수

Q

○○은행의 지점장급 간부 甲은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중앙부처에 파견되어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던 중,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적자금 투입여부 심사를 받고 있던 A저축은행 대표 B를 만나 20만원 상당의 식사와 30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받은 경우, 甲, A, B는 청탁금지법상 어떤 제재를 받나요?

A

- ◆ 중앙부처에 파견된 ○○은행 지점장급 간부 甲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제11조제1항제3호).
- ◆ 20만원 상당의 식사비는 음식물 상한액 3만원 초과,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선물 상한액 5만원을 초과하며, 甲과 B 간의 관계 상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이 인정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제8조제3항제2호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총 50만원 상당의 금품등(20만원 상당의 식사,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B는 총 5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 A저축은행은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24조).

- 참고로,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는 양벌규정의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A저축은행은 대표 B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책되기 어려움

참고판례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바, ... 「산지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위 양벌규정에 근거한 형사처벌이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4817 판결 등 참조).

4.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사례 156 '지체 없이'의 의미(1)

Q

공직자 甲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받고 두 달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불안하기도 하고, 내사 등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신고하고 돈을 돌려주었을 경우 공직자는 면책되나요?

A

- ◆ 甲의 경우 두 달 정도 돈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지체 없이 신고·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지체 없이 신고·반환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 다만, 신고·반환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자진하여 신고·반환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제15조제3항).

-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함(제9조 제1항, 제2항, 제6항)
 - 이 때 '지체 없이'라 함은,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며,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
 -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 대상(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한 공직자등은 제재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등이 자진하여 신고하였으나 신고가 지체된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제15조제3항)

Q

납품업체 직원 A, B, C 3명은 함께 물품계약 담당 공기업 과장 甲을 찾아가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시다'며 50만원 상당의 홍삼, 30만원 상당의 공연초대권, 40만원 상당의 워터파크 연간이용권을 각각 건네었는데, 甲이 다음 날 이를 모두 돌려준다면 면책될 수 있나요?

A

- ◆ 甲은 금품등을 받은 다음 날 다시 돌려주었으나,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지체 없이 신고·반환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 다만, 반환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자진하여 반환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제15조제3항).

- 공기업 과장 甲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며(제2조제2호나목), 납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물품계약 담당 공기업 과장과 해당 공기업에 납품을 하는 업체 직원 간에는 직무관련성 인정됨
- 공직자등이 자진하여 신고하였으나 신고가 지체된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제15조제3항)
- 甲은 납품업체 직원 3명으로부터 각 50만원, 30만원, 4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았으나, 금품등의 출처 및 실제 제공자는 납품업체이므로, 납품업체로부터 총 120만원을 받은 것으로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제21조)
 - 다만, 자진 신고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제15조제3항)
- 납품업체 직원 3명은 직무와 관련하여 각 50만원, 30만원, 4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제공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 ※ 다만, 직원 3명이 상호 의사연락 하에 공동으로 제공행위를 하였다면 모두 공동정범(1회 100만원 초과 제공)으로 처벌될 수 있음
- 납품업체는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다만 임직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가능(제24조)

Q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 甲이 부친상을 당하여 장례를 치르고 5일 정도 지난 후 부의금을 정리하다가 비로소 유관기관 임원 A가 경조사비 200만원을 낸 것을 확인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 ◆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 ◆ 그러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장 등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공자에게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한 공직자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 ◆ 甲은 장례를 치르고 5일 정도 지난 후 부의금을 정리하다가 비로소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확인한 즉시 청탁금지법상 신고·반환의무를 이행할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 甲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가목)
-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함(제9조제1항, 제2항, 제6항)
 - 이 때 '지체 없이' 라 함은, '불필요한 지연 없이' 를 의미하며,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
 -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 대상(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한 공직자등은 제재대상에서 제외

사례 159 '지체 없이'의 의미(4)

Q

신문사 부장 甲의 승진 소식이 알려지자 A기업체 대표 B(직무관련성 있음을 전제)가 20만원 상당의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甲은 축하난을 받을 당시에는 비싼 난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가 얼마 후 알게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신문사 부장 甲은 면책될 수 있나요?

A

- ◆ 甲은 자신이 받은 축하난이 수수 금지 금품등(5만원 초과 선물)에 해당함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나중에 신고하였으므로, 지체 없이 신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 다만, 신고가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자진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제15조제3항).

- 신문사 부장 甲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라목)
-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함(제9조 제1항, 제2항, 제6항)
 - 이 때 '지체 없이' 라 함은, '불필요한 지연 없이' 를 의미하며,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
 -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 대상(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한 공직자등은 제재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등이 자진하여 신고하였으나 신고가 지체된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제15조제3항)

사례 160 외교상 외국기관에서 선물을 받는 경우 처리방법

Q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甲이 외국기관을 방문하고 선물로 15만원 상당의 스카프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교사례> 공직자가 외국기관을 방문하고 외국공무원으로부터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甲은 외국기관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15만원 상당의 스카프에 대해 지체 없이 ○○중앙부처의 장에게 신고하고 스카프를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 국내 공직자등이 외국에서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므로(속인주의), 원칙적으로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는 것은 금지되나,
 -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외국 또는 직무관련 외국인으로부터 국내시가 기준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도하도록 규정
 - 따라서 외국기관으로부터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는 것 자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제8조제3항제8호)
 - 다만, 甲은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기관으로부터 받은 15만원 상당의 스카프에 대해 지체 없이 ○○중앙부처의 장에게 신고하고 스카프를 인도해야 할 것이며, 위반 시 징계 대상에 해당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5. 제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선물의 가액)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사례 161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할 경우 반환 액수

Q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 가액 한도 5만원을 초과하는 10만원만 반환하면 되나요?

A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바,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면 해당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5만원을 초과하는 10만원 부분만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판례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위 조항에서 정한 3만원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수수할 당시 금품의 액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공무원이 일단 위 조항(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이상 금품의 공여자에게 그 초과액을 돌려주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 산정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3만원이 넘는 금품에 대하여 그 초과액을 공여자에게 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금품을 받았음으로써 행동강령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 2013. 6. 4. 선고 2012구합2687 판결)

5.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사례 162 외부강의등에 있어 '1회'의 의미

Q

○○공공기관 직원 甲은 □□연수원에서 외환업무과정(5일) 중 2일에 걸쳐 강의요청(1일차 외환관계법규 2시간, 2일차 외환조사사례 2시간)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사례금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A

- ◆ 강의과목이나 수강대상이 다를 경우 각 1회의 강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일차 강의와 2일차 강의는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 ◆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1시간을 초과하는 강의 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관계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하므로, 공공기관 직원 甲은 1회의 강의 당 30만원(20만원 + 10만원(20만원 × 1/2))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甲은 1일차 외환관계법규 강의와 관련하여 30만원, 2일차 외환조사사례 강의와 관련하여 30만원, 즉 총 60만원을 한도로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개설 주체나 전체 과정을 단위로 하면 1회의 의미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으므로, 강의주제·과목이 같은 지 여부, 수강대상이 같은 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등인지 여부를 판단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을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시행령 [별표 2])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 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 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라.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마.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례 163 외부강의등에 있어 '직무관련성'의 의미

Q

환경전문기자 甲이 기업(환경문제와 직결되는 업종의 기업) 주최 세미나에 참석하여 강연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사례금등 상한액 적용을 받나요?

A

위 세미나에서의 강연은 甲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환경전문기자로서의 지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연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기자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공직자등에 해당 (제2조제2호라목)
-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됨(제10조제1항)

Q

- (1) 국내 사립대학 교수가 외국대학,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나요?
- (2) 국적은 한국이지만 해외 대학에 소속된 교수가 국내에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나요?
- (3) 세계적인 석학을 초청하는 국제심포지엄에서 세계적 수준의 국내 대학 교수는 100만원, 미국 대학 교수는 5000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 (1) 국내 사립대학 교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며(제2조제2항다목),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르게 됩니다(시행령 [별표 2] 1호라목).
-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주체는 공직자등인바(제10조 제1항), 외국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포함된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대학 소속 교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3) 미국 대학 교수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주체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 대학 교수의 경우 해당 국제심포지엄이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초청받은 것이어야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제10조 제1항).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 다.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 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 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사례 165 '기고'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

Q

언론사 기자가 국회조사처의 요청으로 원고지 150매의 기고를 요청받은 경우에도 10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되는지요?

A

기고의 경우에도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언론사 기자의 경우 기고 1건당 1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합니다.

○ 시행령 [별표2] 참조

사례 166 1시간 미만의 강의일 경우 상한액

Q

○○공공기관 직원 甲이 □□연수원으로부터 30분 강연을 요청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1시간 이내의 강의는 1시간 상한액을 적용하여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20 만원을 상한액으로 합니다.

○ 시행령 [별표2] 참조



IV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등

IV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등

사례 167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

Q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할 경우,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A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는 점, 소속기관장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음**(제7조 제7항)
 - 이는 공직자와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반복되는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함
 - 다만, 일률적으로 공개 시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의 내용, 조치사항 공개 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공개 여부를 **공공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행정처분 현황 등을 공개하는 입법례 증가 추세]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 ▶ 「식품위생법」 :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수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

사례 168 허위신고 등에 대한 대응방안

Q

정당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부정청탁으로 억울하게 신고당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A

청탁금지법은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처리 등과 관련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부정청탁 사실을 신고할 때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신고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시해야 함(제13조제3항)
- 또한,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보호·보상을 받을 수 없음(제13조제2항)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신고 시 「형법」에 따라 무고죄로 처벌]

-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과태료 대상인지 아니면 형사 처벌 대상인지 여부를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A

- ◆ 청탁금지법상 조사기관 중에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 포함되므로, 신고를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 받은 공공기관은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제14조제1항).
- ◆ 공공기관의 장은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렴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 ◆ 공공기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 ◆ 결국, 형사처벌 대상인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대상인지는 공공기관 소속 청렴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청렴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다만, 과태료 부과여부 및 액수, 기소 여부는 각각 관할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조사기관은 ①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②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임(제14조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접수기관에는 해당하나, 조사기관은 아님

○ 조사기관은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제기,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14조제3항)

사례 170 조사기관의 범위

Q

과태료 부과대상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청탁금지법을 근거로 언론사에도 조사 권한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A

언론사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므로(제2조제1호마목),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공공기관'에도 해당되어 청탁금지법령상 조사 기관에 인정되는 조사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조사기관은 ①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②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임(제14조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접수기관에는 해당하나, 조사기관은 아님

Q

- (1) 부당이득 환수 규정은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 (2) 회사가 받았던 인·허가가 취소되거나 입찰 결과가 바뀔 수도 있나요?
- (3) 취업제공의 경우 부당이득 환수 조항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요?

A

- ◆ 청탁금지법 제17조의 부당이득 환수는 통상의 민사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봄이 상당하며(「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이나 당사자소송 등의 활용은 아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인·허가나 입찰이 근거법령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 해당 인·허가나 입찰은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정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면, 이미 지출·교부된 상대방의 이익은 통상의 민사절차(「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따라 환수하게 될 것입니다.
- ◆ 취업제공이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방편에 불과한 경우, 수령하기로 하였거나 수령한 급여를 통상의 민사상 절차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함(제17조)

참고판례

감사원 감사위원인 피고인이 감사원의 요청으로 금융감독원 등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甲상호저축은행 측에 자신의 형 乙의 취직을 부탁하여 乙에게 일정기간 매월 급여를 공여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취업 경위, 실제 근무형태, 공여자와 피고인의 의사 등을 종합할 때 乙의 취직은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여 乙이 10개월 동안 수령한 급여 합계 1억원이 알선수재액이라고 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2. 2. 23. 선고 2011노3252 판결)

사례 172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범위

Q

청탁금지법 제20조의 담당관을 언론사 포함 모든 공공기관이 지정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A

언론사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라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즉,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모든 기관들은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V

징계 및 벌칙 등

V 징계 및 벌칙 등

사례 173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위반 사실에 대한 통보 주체

Q

청탁금지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대상 사실을 법원에 통보할 권한이 있다면, 예컨대 언론사의 사장에게도 그러한 통보 권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상급 감독 정부기관에 있는 것인지요?

A

언론사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라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언론사 사장도 청탁금지법 제23조제7항의 '소속기관장'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 사실을 법원에 통보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언론사의 상급 감독 정부기관이 과태료 부과대상 사실을 법원에 통보할 권한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 부과)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Q

- (1)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주도 제재를 받나요?
-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용인, 종업원인 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23조 제2항 및 제23조제3항의 부정청탁을 한 경우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도 과태료를 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 국가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위 법상의 부정청탁을 하였다면 누구에게 양벌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지요?
- (3) 공직자등(기자, 사립학교 교사 등)이 금품등을 제공하여 제22조제1항 제3호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 소속 언론기관 및 학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요?

A

- (1) 종업원이 사업주(법인과 개인을 포함)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사업주도 양벌규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24조).
- (2) 국가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 이는 “제3자(소속 기관)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해당하나, 이 경우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위반행위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만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 (3) 청탁금지법 제24조에 따르면, 제22조제1항제3호 위반행위의 경우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바, 기자와 사립학교 교사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제2조제2호다목, 라목), 기자나 사립학교 교사가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그 소속 언론기관 및 학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양벌규정은 사업주가 직접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사업주 쌍방을 함께 처벌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제24조 본문)

-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가능(제24조 단서)

○ 청탁금지법에서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위반행위 유형으로 4가지를 정하고 있음

조문	위반행위 유형
제22조제1항제3호	공직자등이 아닌 자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 제공
제23조제5항제3호	공직자등이 아닌 자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제공
제23조제2항	공직자등이 아닌 자가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제23조제3항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